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4. 2. 29

DB손해보험주식회사

본인은 DB손해보험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충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 2. 29

DB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정 종 표

- 목 차 -

1. 지배구조 일반 ---------- 4

2. 이사회 ---------- 9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6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44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52

6. 감사위원회 ---------- 56

7. 위험관리위원회 ---------- 64

8. 경영위원회 ---------- 75

9. ESG위원회 ---------- 78

10.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80

11.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80

[별첨1]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별첨2] 2023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별첨3] 지배구조 관련 사규(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최고경영자승계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위험관리위원회규정, 내부통제기준 등)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DB손해보험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객·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권한을 분리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위임하였으며,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대표이사 등 경영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에 대한 선임 및 해임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외이사에게는 자료요청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여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	이사회 총원	사외이사	사내이사
이사수	5명	3명	2명

사내이사 임기는 3년, 사외이사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주총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에 6년 이상 재임하였거나, 계열사를 포함하여 최대 9년 이상 재임한 경우 선임을 제한하여 장기 재임에 의한 이해상충 소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 등의 자기권력화를 견제하고 후보추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인 사외이사를 재선임 시 위원 본인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특정 배경 및 직업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23년말 기준 보험경영분야 2명, 금융경제분야 2명, 금융보험분야 1명으로 구성) 그리고 정기/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는 등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및 운영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기업지배구조헌장, 윤리강령 등 주요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 통합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정관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활동내역 등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 http://www.idbins.com,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회사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겠습니다.

나. 지배구조 구성

(1)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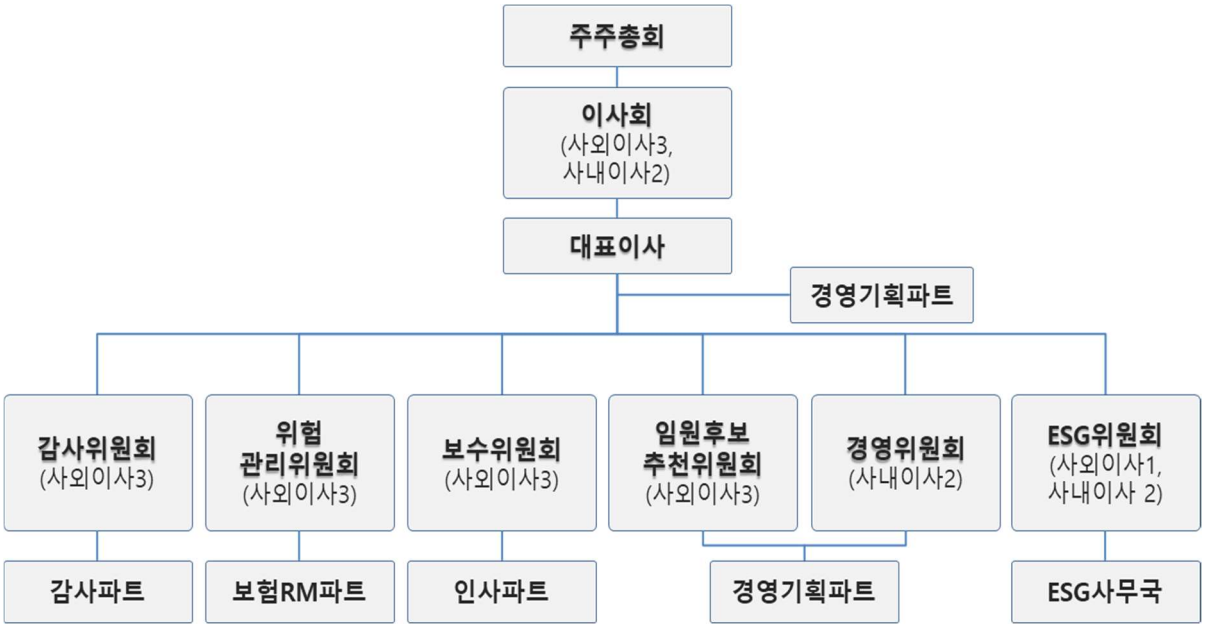

(2) 지배구조의 특징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내이사가 이사회의장으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규정 등에 의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기능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은 60%(3명)으로 법령에서 정한 수준(과반수)을

충족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이사회 의사결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이사회 평가 시행과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을 위한 후보군 운영 등을 통해 이사회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중장기적 관점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과 역할의 명확화 및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최고경영자승계규정'을 제정('15.12월)하였으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16.8월 시행)에 따라 지배구조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괄규정인 지배구조내부규범('16.10월)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사는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위해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 등의 세부내용 등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ESG위원회) 6개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회사의 회계와 업무의 감사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사회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전원 사외이사(3인)로 추천되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1인은 분리선임을 통해 선임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에 대한 투명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전원(3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검증 등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건에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수립을 통한 위험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원 전원(3인)을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및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개정 등 이사회가 리스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의결 및 보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양성 및 전문성을 위해 금융경제분야 2명과 금융보험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성과보상체계 운영·관리, 이행에 대한 점검 및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재무·리스크 연계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 전원 사외이사(3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임직원의 성과보상제도의 설계 및 적정성 심의, 연차보상체계 점검, 성과보상 대상자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운영상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긴급하거나 발생빈도가 높은 경영일반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점의 이전·폐쇄, 지배인의 선·해임 등 이사회에서 위임한 경영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전사 ESG경영의 주요사항 심의 및 보고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위원장인 사외이사 1인과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ESG경영 추진방향 및 주요정책 승인, ESG경영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4) 지배구조 현황

회사는 이사회와 6개의 이사회 내 소위원회 (감사委, 임원후보추천委, 위험관리委, 보수委, 경영委, ESG委)를 통해 경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원수 (사외이사)	의장	관련 규정
이사회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	5 (3)	정종표(사내)	정관§24~35, 지배구조내부규범§4~6,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	회계/업무 감사 등	3 (3)	정채웅(사외)	정관§36~38, 지배구조내부규범§16, 감사위원회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이사후보 추천 등	3 (3)	정채웅(사외)	정관§33, 지배구조내부규범§15,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위험관리 위원회	전사 위험관리 등	3 (3)	최정호(사외)	정관§33, 지배구조내부규범§17, 위험관리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	주요임직원의 성과보상 등	3 (3)	전선애(사외)	정관§33, 지배구조내부규범§18, 보수위원회규정
경영위원회	경영일반사항 의결 등	2 (0)	정종표(사내)	정관§33, 지배구조내부규범§20, 경영위원회규정
ESG위원회	ESG경영의 주요사항 등	3 (1)	최정호(사외)	정관§33, 지배구조내부규범§14, ESG위원회규정

※ 별첨자료(지배구조 관련 사규)

- 정관
- 지배구조내부규범
- 이사회규정
- 감사위원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최고경영자승계규정
- 내부통제기준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건전한 경영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회사 전반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역량과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는 등 이사회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노력을 통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로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내·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스튜어드십코드' 등 책임투자원칙 확산에 따른 이사회 투명성 강화와 이사회 구성이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이사 후보군 유지/관리 및 경쟁력 있는 이사진 구성 등을 위한 이사 보수체계 및 보수한도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2) 구체적 역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결정하고, 이사 및 경영임원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I.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이사회는 회사의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 사항의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정관 §30, 지배구조내부규범 §6, 이사회규정 §10).

이에 따라 '24년 경영목표·전략은 '23.4분기에 경영진 협의 등을 통하여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23.12월 개최된 제57기 제11차 이사회에서 경영목표, 전략 및 예산안 등을 승인하였으며, '23년의 회사 경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등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2024년 경영전략방향 : 회사가치 성장을 위한 전 영역의 구조적 수익성 확보

① CSM확대를 위한 채널별 성장전략 추진

② 회사가치 증대를 위한 상품P/F전략 수립
③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④ 수익성 관점의 계약·보상 효율 관리 강화
⑤ 사업비 효율 체계 재정립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⑥ 자산운용 전문성 강화로 구조적 이익 확대

-주요경영목표 : 홈페이지 內 IR리포트 등을 통해 공개
(www.idbins.com/pc/bizxpress/cmy/inv/ir/list.jsp)

II. 정관변경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여할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상법 §393의2, 이사회 규정 §10)하고 있습니다.

제56기 정기주주총회('23.3.24일)에서는 주주환원책의 일환으로 주주의 배당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배당지급 프로세스를 변경((배당기준일을 의결권기준일과 분리하여 배당액 확정 이후 투자 가능)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제56기 정기주주총회('23.3.24일)의 정관변경안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변경내용	비 고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 분리 (42조)	▪(제42조 이익배당)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도록 개정 ✓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금 확정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상장사협의회 표준정관 반영
중간배당 결정의 날과 '배당기준일' 분리 (42조2)	▪(제42조2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도록 개정	

III. 예산 및 결산승인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을 회사의 주요사업계획과 함께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여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정관§30, 이사회규정§10).

이에 따라 '22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마련한 초안을 이사회(제57기 제1차 이사회_'23.2월)에서 심의·의결 후 외부감사인 검토 및 감사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쳐, 차기 이사회(제57기 제3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24년 예산(사업비)는 '23.12월 개최된 제57기 제11차 이사회에서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 제57기 제1차 이사회 : 제56기 재무제표 등 승인(제56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단위 : 억원)

별도기준		연결기준	
원수보험료	160,415	매출액주1)	228,433
영업이익주2)	12,927	영업이익주2)	13,397
당기순이익	9,806	당기순이익	9,970
자산총계	504,907	자산총계	646,033
부채총계	454,405	부채총계	591,009
자본총계	50,502	자본총계	55,024
배당금 (주당 4,600원)			2,762

주1) 매출액 : 공고용 재무제표 상의 영업수익
주2) 영업이익 : 공고용 재무제표 상의 영업손익

IV.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이사회는「상법(§393)」 상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영업의 양수도 등 주요한 업무의 집행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6, 이사회규정§10).

경영위원회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의거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상법상 지점, 사무소 등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조직개편의 주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제57기 제1차 이사회)

V.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 및 정책은 관련 법규와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 등에 따라 수립/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지배구조 운영체계의 적정성을 이사회 평가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승계규정'과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 승계 요건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운영하는 등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역할로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 2회 이상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후보군 현황 등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제57기 제1차,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하고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VI.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회사는 「상법」,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이해상충행위의 관리 및 감독을 이행하고 있으며, 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이하 금융집단감독법)」 법 시행('21.6.30일)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회사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의 위험과 이해상충행위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협의체 신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그룹준법감시파트, 그룹RM파트 및 금융계열사로 구성된 금융복합기업집단 협의체 등을 통해 내부거래 등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건을 사전에 심의하고, 감사위원회의 상시적인 감사활동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추가검토 자료요구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사회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위원의 반대 등으로 인해 이사회 및 관련 법령이 정한 의결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추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VII.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전한 경영과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전사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을 총괄하는 준법감시인 및 산하 전담조직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 및 개선함으로써 정도경영・윤리경영을 통한 사회의 신뢰 및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10, 이사회규정§11).

VIII.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이사회는 「지배구조법」과 관련 규정에 의거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지배구조내부규범§14, §17), 위험관리위원회는 전사 위험관리전략 수립 및 위험관리의 주요업무에 대한 감독 및 의사결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에관한법률」에 따른 내부거래 등을 통한 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2023년 총 8회 개최되었으며, 리스크관리 제규정 개정 및 리스크관리 전략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IX. 경영승계업무

회사는 중장기적 관점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과 역할의 명확화 및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고 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 비상상황 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 내규인 '최고경영자승계규정(2015. 12월)'과 '지배구조내부규범(2016.10월)'을 이사회 의결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등 세부내용을 담은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의 개정을 의결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상법」 및 「지배구조법」에 따라 사외이사의 총수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이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정관§24),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정관'상 등기이사의 총원수를 3명이상 10명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23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5명의 이사(3명의 사외이사와 2명의 사내이사)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사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보험경영분야 2명, 금융경제분야 2명, 금융보험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는 3년, 사외이사는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연임이 가능하나, 사외이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라 당해회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 포함 총 9년 이상의 재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정관§26). 이는 사내이사의 적정임기를 보장하여 매년 실시되는 사외이사 평가결과의 실질적 활용을 통해 책임경영 관점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3명의 사외이사(최정호, 문정숙, 정채웅) 중

2명의 사외이사(최정호, 정채웅)를 재선임 하고, 1명의 사외이사(전선애)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된 후보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군을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보군 중 적합한 후보자를 심의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9).

이사회 의장으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력 강화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정종표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정종표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보험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손해보험업과 금융산업 전반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과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사유로 이사회 의장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후보자를 제외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정관 30조 등에 의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 심의결과, 보험산업 및 리스크관리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사유로 선임사외이사 후보자로 최정호 사외이사가 추천되었으며, 이에 후보자를 제외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선임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23.3월)

(2) 구성원

(2023.2.28일 기준)

성명	구분	직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소속 소위원회
최정호	사외이사 (임기 1년)	선임사외이사, 위험관리委 위원장, ESG委 위원장	'19.03.15-'24.03.26 (5년 재임)	감사委, 위험委, 보수委, 임추委, ESG委
정채웅	사외이사 (임기 1년)	사외이사, 감사委 위원장 임원후보추천委 위원장	'22.03.25-'24.03.25 (2년 선임)	감사委, 위험委, 보수委, 임추委
전선애	사외이사 (임기 1년)	사외이사, 보수委 위원장	'23.03.24-'24.03.24 (신규 선임)	감사委, 위험委, 보수委, 임추委
정종표	사내이사 (임기 3년)	대표이사 사장, 이사회의장, 경영委 위원장	'21.03.26-'24.03.26 (3년 재임)	경영委, ESG委

남승형	사내이사 (임기 3년)	사내이사	'23.03.24~'26.03.24 (1년 재임)	경영委, ESG委

(3) 약력 요약

성명	주요 경력
최정호 (사외이사)	(前) 금융감독원 계리기준위원회 위원 (前)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이사 (前) 한국보험학회 이사 (現)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정채웅 (사외이사)	(前) 재정경제부 대외협력대사실 과장 (前)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실장 (前) 보험개발원 원장
전선애 (사외이사)	(前) 예금보험공사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前) 손해보험협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現)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장, 교수
정종표 (대표이사. 사내이사)	(前) DB손보 인사지원팀장 상무 (前) DB손보 법인사업부문장 부사장 (前) DB손보 개인사업부문장 부사장 (現) DB손보 대표이사 사장
남승형 (사내이사)	(前) DB손보 U/W팀장 상무 (前) DB손보 경영관리팀장 상무 (現) DB손보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에는 총 11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이사 5인의 평균 참석율은 100%입니다. 이사진은 높은 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이사회 참여와 의견 개진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이사회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부서의 지원 범위 확대 및 현안 이슈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였습니다('23.5월, IFRS17 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 등)

(2) 회의 개최내역

이사 전원은 이사회에 전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57 기 제 1 차 이사회

- 일시 : 2023 년 2 월 7 일
- 안건 통지일 : 2023 년 1 월 31 일

항 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 고
1. 사외이사 성명	최정호	문정숙	정채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1)에 대한 의견	5 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				
가. 제 1 호 의안 - 제 56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태평가 자율진단 결과보고, 소송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의료자문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제56기 中 이사회 의결 건에 대한 결과보고, 2023년 조직개편 주요사항 보고

2) 제56기 재무제표(배당액 등) 심의 및 승인

▶제 57 기 제 2 차 이사회

- 일시 : 2023 년 2 월 20 일
- 안건 통지일 : 2023 년 2 월 13 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최정호	문정숙	정채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0 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1)				
가. 제 1 호 의안 - 해외보험사 투자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1) 베트남 손해보험사(BSH社, VNI社) 지분투자 승인

▶제 57 기 제 3 차 이사회

- 일시 : 2023 년 3 월 3 일
- 안건 통지일 : 2023 년 2 월 24 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최정호	문정숙	정채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1)에 대한 의견	8 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				
가. 제 1 호 의안 - 제 56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나. 제 2 호 의안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다. 제 3 호 의안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평가결과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라. 제 4 호 의안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평가결과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마. 제 5 호 의안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1)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 점검 결과 보고, 선임계리사 검증의견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 보고, 2022년 감사실시 결과 보고,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연간 업무 보고, 계열공익법인에 대한 기부현황, 적정성 점검결과 보고, 2022년 이사회 평가 및 후보군 운영내역 등 보고

2) 가.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일정 및 의결안건 확정
나. 회사의 안전보건체계와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정책과 위험관리기준의 추진 및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결과 승인
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정책과 내부통제기준의 추진 및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결과 승인

마.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관련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등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

▶제 57 기 제 4 차 이사회

- 일시 : 2023 년 3 월 24 일
- 안건 통지일 : 2023 년 3 월 17 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0 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1)				
가. 제 1 호 의안 -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나. 제 2 호 의안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다. 제 3 호 의안 - 제 57 기 이사보수 집행(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라. 제 4 호 의안 - DB Inc.(주)와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마. 제 5 호 의안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1) 가.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정종표) 선임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최정호) 선임

나.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각 위원회 위원장은 개별 위원회에서 선임)

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이사보수 집행안 승인

라. DB Inc.와의 '23.1분기 상품·용역거래 승인

마. 회사 업무의 원활화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제 57 기 제 5 차 이사회

- 일시 : 2023 년 5 월 26 일
- 안건 통지일 : 2023 년 5 월 19 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4 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2)				
가. 제 1 호 의안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1)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제57기 이사 보수 결정사항 보고, U.S.Branch 자본증액 보고, 괌지점 정기감사 결과 보고

2) 가. 퇴직연금신탁업 진출 관련 내부통제기준 개정

▶제57기 제6차 이사회

- 일시 : 2023년 6월 23일
- 안건 통지일 : 2023년 6월 16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1)에 대한 의견	3 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				
가. 제 1 호 의안 - 계열공익법인 기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나. 제 2 호 의안 -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 등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다. 제 3 호 의안 - DB자산운용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라. 제 4 호 의안 - DB Inc.(주)와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마. 제 5 호 의안 - 경영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1) IFRS17 선임계리사 검증의견 보고, U.S.Branch 현지 선임계리사 검증의견 보고, 차익거래 방지 방안 보고

2) 가. 계열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나. 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개선계획 등 승인
다. DB자산운용이 구성하는 사모펀드 참여
라. DB Inc.와의 '23.3분기 상품·용역거래 승인
마. 회사 업무의 원활화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경영임원 선임

▶제57기 제7차 이사회

- 일시 : 2023년 8월 8일
- 안건 통지일 : 2023년 8월 1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1)에 대한 의견		2 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					
	가. 제 1 호 의안 - DB자산운용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나. 제 2 호 의안 - DB생명보험㈜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DB자산운용 지분매입 검토안 보고
2) 가. DB자산운용이 구성하는 사모펀드 참여
나. 계열회사와의 퇴직연금 거래 승인

▶제57기 제8차 이사회

- 일시 : 2023년 9월 26일
- 안건 통지일 : 2023년 9월 19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1)에 대한 의견	1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				
가. 제1호 의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1) 2023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2)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출연 승인

▶제57기 제9차 이사회

- 일시 : 2023년 10월 25일
- 안건 통지일 : 2023년 10월 18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1)에 대한 의견	1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				
가. 제1호 의안 - DB자산운용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나. 제2호 의안 - DB 자산운용 지분 매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1) U.S.Branch 자본송금 관련 보고

2) 가. DB자산운용이 구성하는 사모펀드 참여

나. 은행주주社 공동매각협의회가 보유한 DB자산운용 지분매입 승인

▶제57기 제10차 이사회

- 일시 : 2023년 11월 21일
- 안건 통지일 : 2023년 11월 14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1]에 대한 의견		3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					
	가. 제1호 의안 - 경영임원 등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나. 제2호 의안 - 2023년 추가예산 편성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다. 제3호 의안 - 캘리포니아州 보험종목 추가승인 추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1) 미주 본토 사업면허 추가취득 추진안 보고, 2023년 3분기(누계) 경영실적 보고, DB자산운용 지분매입 관련 SPA계약 추진결과 보고

2) 가. 비등기 경영임원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나. 추가예산 편성 승인

다. 캘리포니아州 內 보험종목 사업면허 추가취득 추진 승인

▶제57기 제11차 이사회

- 일시 : 2023 12월 22일

- 안건 통지일 : 2023년 12월 15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1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				
가. 제1호 의안 - 경영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나. 제2호 의안 - 2024년 사업계획案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다. 제3호 의안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세부지침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라. 제4호 의안 - LDI 자산 위탁운용사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마. 제5호 의안 - DB 자산운용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바. 제6호 의안 - DB 자산운용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사. 제7호 의안 - DB FIS㈜와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아. 제8호 의안 - DB Inc.㈜와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1) 2023년 배당기준일 변경(안) 보고

1) 가. 회사 업무의 원활화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경영임원 선임
나. 차년도 경영전략, 목표 및 예산안 등 승인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세부지침 제정
라. LDI자산 위탁운용사 선정(DB자산운용)

마. DB자산운용이 구성하는 사모펀드 참여
바. DB자산운용이 구성하는 사모펀드 참여
사. 계열회사와의 IT용역계약 및 분기별 거래예상금액 공시내용 승인
아. DB Inc.와의 '24.1분기 상품·용역거래 승인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가 법령, 내규 등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결과는 회사의 중요의사 결정과 경영임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전년도 이사회와 산하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은 크게 ①구성, ②역할과 책임, ③운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하위 8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눠 항목별로 5점 만점기준의 배점 방식으로 평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및 위원회 규모, 구성비율 등의 적정성과 개최시기, 의결안건, 이행률, 출석률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안건 부의/심의 적정성과 윤리적·사회적 책임 고려 여부, 자료와 정보 제공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사록 및 이사회 구성원 등에 대한 서면조사 등의 다면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절차의 세부적인 업무는 이사회 지원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소위원회 평가결과>

구 분	①구성	②역할과 책임	③운영 적정성	총 계
이사회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 출석률 100% ▪ 이행률 100% ▪ 의무개최 요건 (분기1회) 준수	위원회 위원 자체평가[주]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감사위원회		▪ 출석률 100% ▪ 이행률 100%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경영위원회				

주) 안건 심의•의결의 적정성,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의 적정성,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적정성, 의사결정 시 사회/환경적 이슈 및 공익성 고려 여부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은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로 구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연1회 평가를 이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임직원의 보수와 연동된 성과평가와는 별개로 이사의 연임 또는 재임 시 검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평가 : '4.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내 '바. 사외이사 평가' 항목 참조
- 사내이사 평가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운영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로 이사회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과 사내이사 선임 시 후보자 선정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평가결과는 이사회 평가결과 및 각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및 소위원회 평가결과 등의 평균값을 환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정종표(대표이사, 사장) :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로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및 소위원회(경영위원회)를 잘 이끌어온 점 등을 근거로 높은 수준의 평가결과 확인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이사회 의장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 의거 매년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될 경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13)」에 의거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 중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하고,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활동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21.6.30일 시행)」에 따른 대표회사의 이사회로서 금융계열사의 자본건전성 및 내부거래 이해상충 등에 대한 위험관리/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어 금융계열사간 원활한 소통 등이 가능한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 겸직을 통해 신설 제도의 조기 안정화와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도모해왔습니다.

이에 회사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속가능한 경영성과 창출과 효율적 이사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근거로 정종표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점 등을 근거로 최정호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회사는 회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고자 이사회 산하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주요경력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지원부서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탐색 발굴 및 관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 구성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제57기 제1차 및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57기 제3차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세부적인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및 「상법」 등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고, 후보군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적정후보자 선정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3회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적정성 점검',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관리' 및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 등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나.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은 회사의 사외이사후보군 중 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 평가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2023.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정채웅	사외이사	위원장	'23.03.25-'24.03.25 (2년 재임)
최정호	사외이사	위원 (선임사외이사)	'23.03.26-'24.03.26 (5년 재임)
전선애	사외이사	위원	'23.03.24-'24.03.24 (신규 선임)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및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임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후보자의 자격 등 세부내용은 지원부서의 후보군 심의 및 발굴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회사는 임직원 및 사·내외 전문가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 받고 있으며, 추천 받은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의 자격요건 심사 등을 거쳐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임원(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업무수행 평가 방식은 '라. 이사회 및 이사 직무평가' 관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 결과는 재선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지난해에는 총 3회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100% 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들의 높은 관심과 책임감으로 인해 높은 참석율을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사외이사 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재선임을 위해 2023년 3월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과 운영현황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2023년 3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군 운영현황 보고를 위한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사외이사 후보군 중 적합한 후보자 심의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최정호, 정채웅 사외이사의 재임기간 중 활동내역,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관련분야의 경험 및 지식 등을 고려하여 위원간의 추천 및 승인 하에 최정호, 정채웅 사외이사를 후보자로 재추천하고 전선애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 57 기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일시 : 2023 년 3 월 3 일
- 안건 통지일 : 2023 년 2 월 24 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문정숙	최정호	정채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1)에 대한 의견		1 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					
		찬성	찬성	찬성	
가.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최정호 후보자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의결권이 있는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정채웅 후보자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전선애 후보자	찬성	찬성	찬성	
나. 제2호 의안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이 있는 위원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최정호 후보자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정채웅 후보자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전원 찬성으로 가결
		전선애 후보자	찬성	찬성	찬성	

※ 각 사외이사는 본인에 대한 후보 추천 및 승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1)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군 운영현황 등 보고

2)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 승인

▶제 57 기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일시 : 2023 년 3 월 24 일
- 안건 통지일 : 2023 년 3 월 17 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정채웅	최정호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4. 의결안건 1)				
가. 제 1 호 의안 -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1) 정채웅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

▶제 57 기 제 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일시 : 2023 년 11 월 21 일
- 안건 통지일 : 2023 년 11 월 14 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정채웅	최정호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1)에 대한 의견	1 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	

1)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군 운영현황

(3) 평가

회사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 평가를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관련 법령과 내규에서 정한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위원회 규모 및 구성비율의 적정성, 개최시기 등 소집절차, 안건이행률 및 위원출석률에 대한 평가와 안건 부의·심의 적정성, 의사결정 시 윤리적·사회적 책임 고려 여부,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적정성 등 입니다.

이와 같은 점검항목은 감사위원회 자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설문지 작성 등을 통해 이뤄지고 상기 사항은 이사회의 감독하에 지원부서와 감사보조조직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결과

구 분	①구성	②역할과 책임	③운영	총 계
평가 결과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 출석률 100% ▪ 이행률 100%	위원회 위원 평가[주]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주] 안건 심의•의결의 적정성,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의 적정성,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적정성, 의사결정 시 사회/환경적 이슈 및 공익성 고려 여부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 사항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 現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4.3월 만료 예정으로 후보추천 불요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 사외이사의 재임기간 중 활동내역, 사외이사 평가결과와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자격요건 적정성 및 관련분야의 경험 및 지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사외이사 2인(최정호, 정채웅)과 신규 사외이사 1인(전선애)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가) 후보자 성명 및 인적사항

1. 최정호

① 출생연도 :1954년

② 출신학교

-美펜실베니아大 경영학 박사

③ 경력

- 일반경력

• 2010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사외이사
• 2013 (前) 금융감독원 계리기준위원회 위원
• 2016 (前) 한화㈜ 사외이사/감사위원/내부거래위원장
• 2020 (前)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이사
• 2020 (前) 한국보험학회 이사
• 2020~ (現)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다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 해당없음

④ 사외이사 경력

- 회사 근무기간 : 2019년 3월 ~ 현재
- 사외이사 평가결과 : 매우 적합

2. 정채웅

① 출생연도 :1953년

② 출신학교

- 서울대 학사
- 콜로라도 대학원 경제학 석사

③ 경력

- 일반경력

• 1998 (前) 재정경제부 대외협력대사실 과장
• 2007 (前) 금융감독위 기획행정실장
• 2010 (前) 보험개발원 원장(8대)

• 2021 (前) 법무법인 광장 고문

- 다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 해당 없음

④ 사외이사 경력

- 회사 근무기간 : 2022년 3월 ~ 현재
- 사외이사 평가결과 : 매우 적합

3. 전선애

① 출생연도 :1963년

② 출신학교

-美오하이오大 경제학 박사

③ 경력

- 일반경력

• 2012 (前) 예금보험공사 자산운용위원회 자문위원

• 2017 (前)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 2023 (前) 손해보험협회 규제개혁위원

• 2007~ (現)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장, 교수

- 다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 하나카드 사외이사

④ 사외이사 경력

- 회사 근무기간 : 2023년 3월 ~ 현재
- 사외이사 평가결과 : 매우 적합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및 제안사유

각각의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한 후보제안자와 제안사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정호를 추천한 제안자 : 문정숙 사외이사

- 추천사유 : 보험산업과 리스크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해 위험관리위원회 및 ESG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회사의 건전한하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에 기여한 점 등
- 추천자의 주요경력 : (前)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前) 금융소비자연맹

고문, (現) 숙명대학교 소비자경제학 교수

▪ 정채웅을 추천한 제안자 : 최정호 사외이사

- 추천사유 : 보험개발원장을 역임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원한 점 등
- 추천자의 주요경력 : (前) 한국 보험/리스크학회 이사, (現)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 전선애를 추천한 제안자 : 정채웅 사외이사

- 추천사유 :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장으로 재직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금융규제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전문성과 건전성 제고 및 회사 경영의 투명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제안자의 주요경력 : (前) 금융감독위 기획행정실장, (前) 보험개발원장

② 후보자와의 관계

추천된 최정호, 정채웅 및 전선애 사외이사 후보자는 회사와의 이해상충을 우려할만한 거래관계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사외이사간 및 사외이사 후보제안자와 후보자 간에도 거래관계 등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사외이사 후보자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들로, 現 사외이사 2인(최정호, 정채웅)은 재임 시 다양한 의견개진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신규 사외이사인 전선애 역시 경제/금융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금융규제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 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에 적합한 점을 근거로 사외이사 후보자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전문성, 공정성 등에 대한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기존 이사회 활동내역

(기존 사외이사) 등을 근거로 사외이사 후보군 내에서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등
- 점검결과 : 법령상의 자격요건 충족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을 통해 관련법규에 의한 자격요건의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A. 전문성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공정한 검증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발굴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 시 사외이사 후보군 내에서 적합한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하는 등 위원회 운영 시 사외이사의 전문성 요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각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들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B. 직무공정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회 규정 등에 의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후보대상자의 공정성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과 회사와의 거래관계는 전혀 없으며, 사외이사의 겸직업무에 대해서도

회사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 윤리성, 책임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운영 및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에 있어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는 해당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사들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D. 충실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이사후보자의 적극적인 활동의지와 회사와 이사회에 대한 충실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한 회사는 상법에 따라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총 1개 회사로 제한하여,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충실한 참여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는 회사의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의 참석 및 의안에 대한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 본인 소명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총소집 결의사항을 공시할 때에 사외이사 자격에 관한 확인서를 본인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첨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이후에는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등을 통해 본인 소명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회사는 2023년 3월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를 추천하였으며, 이어 감사위원 후보자로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를 추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다각도의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본인 추천 건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을 받은 위원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평가결과

2023년 3월 24일 개최된 제56기 정기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3명으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	재임기간	재임기간	이사회 등 출석율	평가 여부
최정호	'19.03~'23.03	4년 재임	100%	실시
문정숙	'21.03~'23.03	2년 재임	100%	실시
정채웅	'22.03~'23.03	1년 재임	100%	실시

회사는 이사회평가, 자기평가, 직원평가로 구성된 사외이사 다면평가를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 종료 후 사외이사의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평가내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평가는 각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산하 소위원회 참석률로 정하고 있으며, 자기평가와 직원평가의 평가항목은 주주의 이익 및 경영진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등 기본 역할과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외이사 후보자는 적극적 의견개진 및 높은 이사회 참여율 등에 따라, 전반적인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3.3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최정호, 정채웅 사외이사 후보자는 회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에 모두 부합하였습니다. 전선애 사외이사 후보자 또한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모두에 부합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전문성 및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사외이사 후보군 중 현재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1(p.81)의 사외이사 검토보고서와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에 공시된 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요약본
최정호	최정호 사외이사 후보자는 감사위원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과 ESG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사회 및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사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최정호 사외이사 후보자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 평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채웅	정채웅 사외이사 후보자는 감사위원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사회 및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지배구조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정채웅 사외이사 후보자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 평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선애	전선애 사외이사 후보자는 보험·금융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금융규제 등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기관의 자문위원 경험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인 이사회 참여를 통해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전선애 사외이사 후보자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I)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회사는 이사, 주요주주, 임원 및 외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군 중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의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부의하고 있습니다.

(II)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회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이사, 주요주주, 임원, 외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들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로 구성된 후보군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위원회 및 이사회에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III) 후보군 현황

회사는 전문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 관리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 현황 및 주요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총 94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후보군을 운영 중 ('23.12월 현재)

구분							합계
	공직	금융	학계	법조	**IT**	**의료**	
총계	20	24	28	13	8	1	94
여성	2	5	13	12	5	0	37
남성	18	19	15	1	3	1	57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의 관리현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2023.3.3일에 개최된 제57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제3차 이사회에서 후보군 관리 현황과 2022년 사외이사 평가결과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총 92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후보군(남성 55/여성 37)을 운영 중('23.3월 기준)

총원 (남성/여성)	공직	금융	학계	법조	IT
92 (55/37) *(100%)*	19 (17/2) *(21%)*	24 (19/5) *(26%)*	28 (15/13) *(30%)*	13 (1/12) *(14%)*	8 (3/5) *(9%)*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지원내용
2023.3.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 운영현황 ▪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2023.11.2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 운영현황 ▪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3) 감사위원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및 이사회 평가결과와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자격요건 적정성 및 관련분야의 경험 및 지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위원 3인(최정호, 정채웅, 전선애)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가) 후보자 성명 및 인적사항

1. 최정호

① 출생연도 :1954년

② 출신학교

-美펜실베니아大 경영학 박사

③ 경력

- 일반경력

• 2010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사외이사
• 2013 (前) 금융감독원 계리기준위원회 위원
• 2016 (前) 한화㈜ 사외이사/감사위원/내부거래위원장
• 2020 (前)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이사
• 2020 (前) 한국보험학회 이사
• 2020~ (現)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다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 해당없음

④ 사외이사 경력

- 회사 근무기간 : 2019년 3월 ~ 현재
- 사외이사 평가결과 : 매우 적합

2. 정채웅

① 출생연도 :1953년

② 출신학교

- 서울대 학사
- 콜로라도 대학원 경제학 석사

③ 경력

- 일반경력
  - 1998 (前) 재정경제부 대외협력대사실 과장
  - 2007 (前) 금융감독위 기획행정실장
  - 2010 (前) 보험개발원 원장(8대)
  - 2021 (前) 법무법인 광장 고문
- 다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 해당 없음

④ 사외이사 경력

- 회사 근무기간 : 2022년 3월 ~ 현재
- 사외이사 평가결과 : 매우 적합

3. 전선애

① 출생연도 :1963년

② 출신학교

-美오하이오大 경제학 박사

③ 경력

- 일반경력
  - 2012 (前) 예금보험공사 자산운용위원회 자문위원
  - 2017 (前)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 2023 (前) 손해보험협회 규제개혁위원
  - 2007~ (現)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장, 교수

- 다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 하나카드 사외이사

④ 사외이사 경력

- 회사 근무기간 : 2023년 3월 ~ 현재
- 사외이사 평가결과 : 매우 적합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및 제안사유

각각의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한 후보제안자와 제안사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정호를 추천한 제안자 : 문정숙 사외이사

- 추천사유 : 보험산업과 리스크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해 위험관리위원회 및 ESG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회사의 건전한하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에 기여한 점 등
- 추천자의 주요경력 : (前)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前) 금융소비자연맹 고문, (現) 숙명대학교 소비자경제학 교수

▪ 정채웅을 추천한 제안자 : 최정호 사외이사

- 추천사유 : 보험개발원장을 역임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원한 점 등
- 추천자의 주요경력 : (前) 한국 보험/리스크학회 이사, (現)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 전선애를 추천한 제안자 : 정채웅 사외이사

- 추천사유 :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장으로 재직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금융규제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전문성과 건전성 제고 및 회사 경영의 투명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제안자의 주요경력 : (前) 금융감독위 기획행정실장, (前) 보험개발원장

(다) 후보자 추천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위원 전원이 이에 동의하였으며,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사외이사 후보자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들로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감사위원 요건에 부합하고, 풍부한 금융 전반의 업무 경험 등을 통해 보험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사외이사 후보자는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적극적,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전문성,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 및 기존의 이사회 활동내역 등을 근거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
- 점검결과 : 법령상의 자격요건 충족

② 금융회사가 정한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회사는 관련 법령,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지배구조모범규준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을 감독 관리하기에 적합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후보자들은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A. 전문성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여부를 감사위원 후보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지배구조법 제19조에서 요구하는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각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들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B. 직무공정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회 규정 등에 의거 감사위원 후보 추천 시 후보대상자의 공정성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과 회사와의 거래관계는 전혀 없으며,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업무 겸직 등에 대해서도 회사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회사의 감사위원(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 윤리성, 책임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에 있어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외에도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사 업무 수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는 해당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사들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언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적 이슈에 연루된 적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습니다.

D. 충실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의 적극적인 활동의지와 회사와 이사회에 대한 충실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각 후보자는 감사위원회의 참석 및 의안에 대한 사전검토 등 감사위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 본인 소명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총소집 결의사항을 공시할 때에 사외이사(감사위원) 자격에 관한 확인서를 본인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첨부하고 있으며, 선임 이후에는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등을 통해 본인 소명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회사는 2023년 3월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를 추천하였으며, 이어 감사위원 후보자로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를 추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적위원 3명 중 본인 추천 건에 대한 의결권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 및 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활동내역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사외이사는 '23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산하 소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하였으며,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안건 심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제57기(2023년) 활동내역 >

구분 / 사외이사명	이사회		감사위		위험관리위		임추위		보수위		ESG위		활동 총계 (참여율)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개최	
문정숙	3	3	1	1	1	1	1	1	1	1	-	-	7/7
최정호	11	11	5	5	8	8	3	3	3	3	3	3	33/33
정채웅	11	11	5	5	8	8	3	3	3	3	-	-	30/30
전선애	8	8	4	4	7	7	2	2	2	2			23/23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① 최정호 선임사외이사

2023년 개최된 33회의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부의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이사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총 16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② 정채웅 사외이사

2023년 개최된 30회의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부의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이사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총 15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③ 전선애 사외이사

2023년 개최된 20회의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부의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이사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총 11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④ 문정숙 사외이사

2023년 3월까지 개최된 7회의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부의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이사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총 3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임원책임배상보험 현황

(1) 가입사: 메리츠화재
(2) 가입기간: 2022.12.31~2023.12.31
(3) 보험금(한도): 700억원
(4) 사외이사 공동분담금 : 손해액의 20%(최대 1억원 한도)
(5) 보험료: 647,811천원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1. 교육. 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3.03.24일 (연수시간 : 1시간) -내용 : 회사 경영현황, 이사회 등 지배구조 구성 및 주요현안(관련분야 : 경영/회계)		
사외이사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나.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3.05.26일 (연수시간 : 1시간) -내용 : IFRS17 도입에 따른 주요변화(관련분야 : 경영/회계)		
	사외이사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다.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3.09.06일 (연수시간 : 1시간) -내용 : 신제도(K-ICS) 기준 위기상황 분석 시나리오 설정 및 방법론 (관련분야 : 경영)		
	사외이사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라.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3.11.21일 (연수시간 : 1시간) -내용 :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관련분야: 경영)		
	사외이사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마.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3.12.22일 (연수시간 : 1시간) -내용 : 주요 시장동향 및 경영전략(환경경영 등) (관련분야: 전략)		
	사외이사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		5	5	5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최정호 사외이사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지배구조법, 상법)
	나. 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지배구조법, 상법)

다. 법상 감사위원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지배구조법, 상법)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요건충족(전문역량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요건충족(내부거래 등 이해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요건충족(준법, 윤리성 등의 결격사유 없음)
라. 충실성	충족	요건충족(1개 이상 타금융사 겸직 없음)

(2) 정채웅 사외이사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지배구조법, 상법)
나. 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지배구조법, 상법)
다. 법상 감사위원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지배구조법, 상법)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요건충족(전문역량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요건충족(내부거래 등 이해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요건충족(준법, 윤리성 등의 결격사유 없음)
라. 충실성	충족	요건충족(1개 이상 타금융사 겸직 없음)

(3) 전선애 사외이사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지배구조법, 상법)
나. 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지배구조법, 상법)

	다. 법상 감사위원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지배구조법, 상법)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요건충족(전문역량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요건충족(내부거래 등 이해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요건충족(준법, 윤리성 등의 결격사유 없음)
	라. 충실성	충족	요건충족(1개 이상 타금융사 겸직 없음)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 기부금등 지원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회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되, 지배구조법 상 매년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대 6년(타금융계열사 포함 9년) 재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다면평가방식(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www.idbins.com)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연임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평가 주체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주관 하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평가 기준

회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의 네 가지 항목에 대해 다면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이사회평가, 사외이사의 자기평가와 직원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출석율로, 자기평가 및 직원평가는 평가설문서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가설문서의 평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모든 주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기업의 경영이념과 장기적인 비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회사의 지속 가능한 목표와 이익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1점에서 5점까지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평가 절차

평가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연도 중 사외이사별 활동내역에 대한 다면평가방식(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를 위해 평가방법 및 결과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위탁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총론

'23년도 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활동 및 이사 본인, 담당 임직원에 의한 다면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평가결과 사외이사의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이 주주가치 제고 등에 부합하는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에서 본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②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구분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전문성	▪ 보험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독 당국의 자문위원 등 충분한 경험을 겸비	▪ 금융과 보험산업에 대한 공직 경험과 보험개발원장 등 역임	▪ 보험·금융업 및 금융규제 등에 폭넓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기관의 자문위원 경험을 겸비
직무 공정성	▪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 및 생보사 사외이사 역임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	▪ 금융감독 분야의 다양한 감독행정 경험과 재무/회계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	▪ 금융/경제분야의 깊은 이해와 다수기관 (국가기관 포함) 의 자문위원 역임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

윤리 책임성	▪ 학자 출신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관점의 투명한 이사회 운영 적극 지원	▪ 공직자 출신의 청렴한 성품과 주주, 투자자 등에 대한 신뢰를 우선으로 하는 윤리책임성을 보유	▪ 학자 출신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관점의 투명한 이사회 운영 적극 지원
충실성	▪ 2023년 내 이사회 및 소속 소위원회 전체 출석(100%)		

(3) 외부평가

회사는 자체 평가기준을 통한 사외이사 내부평가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을 검증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 운영 및 이사회의 해외보험사 지분인수 추진(제57기 제2차)에 대한 심의와 DB자산운용 지분취득(제57기 제9차) 및 LDI자산 위탁운용사 선정(제57기 제11차)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 의견개진을 개진하였으며, 관련 활동내용을 당해 의사록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지원부서 : 이사회 간사(부서)
- 조직구성 : 부서장 1명, 담당자 2명
- 지원내역
  - ('23.03.03일) 선임사외이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위한 실무지원
  - ('23.03.24일) 이사회 내 위원회구성 등에 대한 심의 지원
  - ('23.08.08일) 선임사외이사 및 ESG위원회 등을 위한 실무지원
  - ('23.12.22일) 이사회 안건에 대한 검토 등 지원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재직기간 (현 임기만료일 기준)

- 최정호 : 5년('19.3월~'24.3월)
- 정채웅 : 2년('22.3월~'24.3월)
- 전선애 : 1년('23.3월~'24.3월)

(2) 사외이사 보수 (사외이사 1인 기준)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8,000천원**	
	1. 기본금	48,000천원	-
	2. 상여금	-	
	3. 기타 수당	-	
나. 보수 이의 기타 편익		**5,000천원**	
	1. 업무활동비	-	
	2. 건강검진 지원	2,000천원	종합검진 1회(배우자 포함)
	3. 차량제공	-	
	4. 사무실제공	-	
	5. 기타 편익제공	4,200천원	여비교통비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해당없음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재임기간	담당위원회	주요경력
김성국	'16.3.18	'22.3.26	72개월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경영위원회	-재무부 보험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IBK신용정보 대표이사
이승우	'17.3.17	'21.3.13	48개월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화생명 사외이사
최정호	'19.3.15	'24.3.26	60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금융감독원 계리기준위원회 위원 -리스크/보험학회이사 -서강대 교수(경영)
문정숙	'21.3.26	'23.3.26	24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숙명여대 교수(소비자)
정채웅	'22.3.25	'24.3.25	24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재경부 대외협력대사실 과장 -금융감독위 기획행정실장 -보험개발원 원장
전선애	'23.3.24	'24.3.24	12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손해보험협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여성경제학회장 -중앙대 국제대학원 학장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회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승계절차를 수립하고자 「최고경영자승계규정」을 제정('15.12월) 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 마련을 통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최고경영자승계규정」에 따른 후보군 운영 등 적정성 여부는 연 1회 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심의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16.8.1일 시행)」 등 관련 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16.11월 제정)' 등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회사의 최고경영자경영승계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회사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최고경영자 승계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한 각종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는 등 후보군

관리업무를 이사회 및 인사 담당부서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상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회사가 속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시점에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받아 자격요건(최고경영자승계규정 제4조)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내규에서 정한 전문성, 도덕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주요역할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발굴 및 육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없이 최종후보를 확정하여야 하며, 최종후보를 확정한 이후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이사선임 이후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선임의 건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업무대행,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2) 비상계획

회사는 최고경영자가 일신상의 사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비상상황에 대한 경영승계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비상계획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관 규정(제29조)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최고경영자가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승계규정」 제8조)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최고경영자 후보자 심의 시 법령 상 임원의 자격요건(소극적 요건)에 부합하며,

금융회사가 정한 요건(적극적 요건)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등
- 평가결과 : 관련 법령 상의 자격요건 충족

2) 적극적 요건(금융회사가 정한 요건)
- 자격요건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9조, 최고경영자승계규정 제4조 등
- 평가결과 :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하는 자로 최고경영자 주요역할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발굴 및 육성하고, 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고객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증진 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 결의 후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이사 선임을 완료한 뒤, 이사회의 의결로 최고경영자(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경영진 등을 대표이사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후보군 운영내용과 선임절차 등을 연 1회 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군의 발굴 및 육성은 최고경영자 주요역할로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주주, 사외이사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주요역할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발굴 및 육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지원 부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회사는 최고경영자승계규정에 의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가 후보군의 발굴 및 육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운영현황 등은 매년 연 1회 이상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을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회사는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등에 따라 現 대표이사, 주요 경영진 및 대내외의 추천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구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발굴 및 육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지원부서의 후보자 적정성 점검 등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진인 실/부문장 및 現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총 11인의 후보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4.3월 현재)

성 명	직 책	직 위
정종표	대표이사	사장(등기이사)
박제광	경영기획실장	부사장
박성식	고객상품전략실장	부사장
이범욱	보상서비스실장	부사장
이창수	전략사업부문장	부사장
황성배	자산운용부문장	부사장
남승형	경영지원실장	부사장(등기이사)
강경준	신사업부문장	부사장
안승기	개인사업부문장	상무
박기현	해외사업부문장	상무
최혁승	법인사업부문장	상무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회사는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영승계계획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점검내용
2023.3.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 최고경영자 후보군 운영현황 ▪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2023.11.2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최고경영자 후보군 운영현황 ▪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회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관련 최고경영자승계규정 제6조에 따라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 이외에도 채용, 인력관리, 인사제도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는 이해상충 소지가 적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인사파트 / 경영기획파트
- 전체 직원수 : 13명 / 11명
- 실무담당자 : 부서장(인사파트장, 경영기획파트장), 수석 2명
- 운영내역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점검내용
2023.3.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최고경영자 후보군 운영현황 ▪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이사회	
2023.11.2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최고경영자 후보군 운영현황 ▪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외부감사인의 선임,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법성 및 적정성 관점에서 감시 및 조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3명) 전원을 경영/회계/리스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제57기 제5차 감사위원회('23.12.22일)에서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과 핵심감사 항목 선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규정(제17조)과 감사위원회직무규정(제3조) 등에 따라 감사업무

지원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지원부서의 담당임원(감사실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소위원회 개최 안건 전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심의를 거쳤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등을 통한 사전심의를,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사후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상법 §412)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402).

이에 따라 '23년 3월에 소집된 '23년도 1차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등에 대한 경영진의 업무보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해당 업무의 임원이 동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외감법 §10).

이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사전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외부감사인 후보자를 평가/선정해왔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지난 6년간 (2017년~2022년)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여 외감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정감사제도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정한('22.11월)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요건을 승인하였습니다('22.12월_제56기 제5차 감사위원회).

회사는 외부감사인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수시로 이슈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감사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상근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고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년도마다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 받아 평가한 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외감법 §8).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8).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DB손보의 감사위원은 상기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구성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정채웅	사외	감사위원	2023.03.25	2024.03.25
최정호	사외	감사위원	2023.03.26	2024.03.26
전선애	사외	감사위원	2023.03.24	2024.03.2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에는 재적위원 전원의 참여 하에 총 5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전 미리 감사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가능 하도록 하였고, 필요 시 관련 임원에게 직접 안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의 교류를 통해 깊이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총 9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57기 제1차 감사위원회 : 3월 3일 금요일 (안건통지일 : 2월24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정채웅	최정호	문정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1)]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위원회 보고	-	-	-	
나. 외부감사인 기말감사 감사위원회 보고	-	-	-	
다.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감사위원회 보고	-	-	-	

	라. 2022년 4분기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결과 보고	-	-	-	
4. 의결안건 [2]					
	가. 제1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이사회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
	나. 제2호 의안 - 감사보고서 이사 제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
	다. 제3호 의안 - 2022년 감사실적 이사회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

1)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감사에 대면 보고
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다. 기초서류 내용,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 확인한 의견서 제출
라.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결과 보고

2)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나.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다.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검토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

▶제57기 제2차 감사위원회 : 3월 24일 금요일 (안건 통지일 : 3월17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정채웅	최정호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4. 의결안건[1]				
가. 제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

1) 가. 정채웅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

▶제57기 제3차 감사위원회 : 4월 7일 금요일 (안건 통지일 : 3월31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정채웅	최정호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1]				
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방향 등 감사위원회 보고	-	-	-	
4. 의결안건 [2]				
가. 제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일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

1) 가. 감사인지정제도를 통해 선임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방향 등을 보고

2) 가. 감사활동의 효율증대를 위한 직무규정 일부 개정

▶제57기 제4차 감사위원회 : 9월 26일 화요일 (안건 통지일 : 9월19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정채웅	최정호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1]				
가. 2023년 상반기 감사실적 보고	-	-	-	
나. 외부감사인의 2023년 상반기 검토결과 보고	-	-	-	
4. 의결안건 [2]				
가. 제1호 의안 - 외부감사인의 2023년 통합감사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

1) 가. 2023년 상반기 감사실적을 감사위원회에 보고

나. 감사인지정제도를 통해 선임된 외부감사인의 상반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2) 가. 객관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2023년 통합감사계획 의결

▶제57기 제5차 감사위원회 : 12월 22일 금요일 (안건 통지일 : 12월15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정채웅	최정호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1]					
	가. 외부감사인의 감사 준수사항 이행결과 보고	-	-	-	
	나. 2023년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결과 보고	-	-	-	
4. 의결안건 [2]					
	가. 제1호 의안 - 2023년 핵심감사항목 선정 등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
	나. 제2호 의안 - 2024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
	다.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일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

1) 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이행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
나.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결과 보고

2) 가.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과 핵심적으로 감사할 항목을 논의하고 선정
나. 2024년 환경변화 및 감사방향 등에 따른 감사계획 의결
다.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일부 자구 명확화

(3) 교육. 연수 실시내역

사외이사 성명		정채웅	최정호	전선애
가.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3.4.7일 -내용 : IFRS17 도입으로 인한 재무영향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나.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3.9.26일 -내용 :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관련 주요사항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다.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3.12.22일 -내용 : 가이드라인 반영 관련 재무재표 변경내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누적 교육 시간	3	3	3

(4) 평가

회사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 평가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위원회 규모 및 구성비율의 적정성, 개최시기 등 소집절차, 안건 이행률 및 위원출석률에 대한 평가와 안건 부의·심의 적정성, 의사결정 시 윤리적·사회적 책임 고려 여부,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적정성 등입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감사위원회 자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설문지 작성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와 감사보조조직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평가결과

구 분	①구성	②역할과 책임	③운영	총 계
평가 결과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 출석률 100% ▪ 이행률 100%	위원회 위원 평가[주]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주] 안건 심의•의결의 적정성,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의 적정성,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적정성, 의사결정 시 사회/환경적 이슈 및 공익성 고려 여부

라. 감사보조조직 등

(1) 감사보조조직 설치 현황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보조조직으로 감사실을 두고 있고 감사실장이 감사보조조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감사보조조직의 인원은 감사실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입니다.

(2)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지원한 주요내용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23.3.3	감사위원회	2022년 감사실적 이사회 보고건 등
2023.3.24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선정의 건
2023.4.7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감사방향 등 보고
2023.9.26	감사위원회	2023년 상반기 감사실적 보고 등

2023.12.22	감사위원회	2023년 핵심감사항목 선정의 건 등
상시	감사실장	일상감사 업무 및 경영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등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

리스크란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자기자본 또는 손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당사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리스크 발생 원천을 파악해 그 규모를 측정하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리스크를 회피, 부담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 수립 등을 포함하는 관련 제규정의 제·개정, 리스크 관리 전략수립과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등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3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사가 직면한 위험수준이 가용자본 대비 적정 수준인지 파악하여 결정한 뒤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험자본을 각 위험 종류별로 배분합니다. 배분된 위험 종류별 위험자본의 유지관리를 위해 위험 유형별(보험, 금리, 시장 및 신용), 투자 유형별(주식, 부동산 등) 한도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이로 인해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및 기업가치 극대화 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사는 리스크관리 전략을 지급여력제도(이하 'K-ICS 제도'라 함) 변경에 따른 K-ICS비율 유지방안,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에 기인한 금리변동성 증가에 따른 가치변동 최소화 및 이자수익 중심의 안정적 수익구조 유지로 정하고, 이에 따른

자본배분, 한도설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위험관리책임자 (CRO)를 임명하는 등 리스크관리 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6월부로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사는 금융계열사의 위험을 관리하는 대표금융회사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위험관리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위험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매년 시나리오 테스트(민감도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하에서도 계속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수준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설정, 리스크 한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인 위험선호도(Risk Appetite)를 결정하여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최적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결정된 포트폴리오 자산에 자본을 할당하고, 할당된 자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리스크별로 한도를 설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신용 리스크 한도 관리로는 위험자본 한도, VaR 한도, Exposure 한도, 손실한도, Loss Cut, 분산도 관리 등이 있으며, 금리리스크 한도 관리는 위험자본 한도, 듀레이션 및 자산/부채 매칭률 등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리스크 한도 관리는 보험종목별 보험위험액 가이드라인, 보유전략(재보험 위험관리전략) 등을 통해 자본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8차 리스크관리위원회(개최일 : 2023.12.22일)의 안건 「'24. 위험관리 전략(안)」에서 시장상황과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도 분석, 가용 자본 대비 위험자본 한도 설정, 세부 위험별 위험자본 배분 등 회사의 위험선호도(Risk Appetite) 수준을 결의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회사 전체가 직면한 리스크 수준이 가용자본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배분된 위험자본 중에서, 시장/신용위험자본 관리를 위해 한도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① 한도

구분	주요내용
K-ICS 신용위험액 한도	K-ICS 신용위험액 관리
K-ICS 시장위험액(금리 外) 한도	K-ICS 시장위험액(금리 外) 관리
운용 한도	포트폴리오 內 투자자산 관리
부동산 전체 익스포져 한도	부동산 집중위험 관리
신용등급별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집중 투자 방지
VaR 한도	시가평가자산에 대한 대규모 손실방지 및 변동성 관리
운용손실 한도	트레이딩 자산에 대한 손실 방지
손절매 한도	손실 발생 자산에 대한 선제적 관리

②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내용
국가별 분산도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투자 방지
산업별 분산도 – 주식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 투자 방지
산업별 분산도 – 채권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 투자 방지
산업별 분산도 – 대출채권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 투자 방지
계열별(그룹별) 분산도	감독원 선정 주채무계열(그룹)에 대한 집중 방지
주식 분산도	특정 주식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 방지
발행자별 분산도 – 해외채권	해외 차주 발행채권에 대한 등급 및 업종별 관리
채권 월간 거래금액	채권 거래 규모 관리
채권 신용건전도	채권의 신용건전도를 스코어링하여 관리
해외 대체투자 비중	해외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규모 관리
PEF미인출 약정액	미인출 약정금액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 제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단, 법령 및 사규의 개정에 따른 변경, 또는 단순한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변경, 기타 이에 따른 단순한 편제의 자구의 정리 등 이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 가능합니다.

(마) 기타

그 외 당사는 리스크 관련 주요사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 관련 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리스크 주요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변동내역에 대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경영방침 上 리스크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 위원)

(1) 총괄

당사는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의 적법성,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적 경영의사결정 및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보험·법률·금융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융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 관련 분야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선임합니다.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최정호	사외이사	위원장	'23.03.26	'24.03.26
정채웅	사외이사	위원	'23.03.25	'24.03.25
전선애	사외이사	위원	'23.03.24	'24.03.2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위험관리위원회는 '23년 총 8회 개최되었으며, 위원 전원 100% 참석하였으며, 총 45건의 안건(의결사항 21건, 보고사항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 관리 제·규정 개정 및 리스크 관리 전략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3년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 3월 3일

[안건 통지일 : 2월 24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최정호	정채웅	문정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2건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2]				
가. 1호안건 위험관리기준 개정(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FY'23 위험자본한도변경(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FY'23 위험관리전략(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FY'23 파생금융거래전략(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FY'23 외화유동성위험관리 전략(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안건 FY'2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전략(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FY'22.12월 리스크주요지표 모니터링 결과, FY'22.12월 위기상황분석 결과,

2) 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지급여력제도 변경사항 반영
나. 부동산공정가치평가를 반영한 위험자본 한도 재배분
다. FY'23 연간 리스크관리 방향, 위험자본 배분, 한도 및 가이드라인 수립
라. 위험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파생금융 거래전략 수립
마. 외화유동성 위험 허용한도, 관리프로세스 등 수립
바. 그룹위험성향, 그룹의 소속회사별 위험한도를 고려한 그룹 위험관리전략 수립

(나) 제2023년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 3월 24일

[안건 통지일 : 3월 1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4. 의결안건[1]				
가. 1호안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가. 최정호 사외이사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다) 제2023년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 5월 26일

[안건 통지일 : 5월 1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5건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2]				
가. 1호안건 위험관리기준 개정(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K-ICS비례성 원칙 적용(안) 승인의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FY'23 부동산PF현황 및 위험관리계획, FY'23.1분기 대체투자 한도관리 현황, FY'2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현황 보고, FY'2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기상황 대응체계 점검결과 보고, FY'22 소속금융회사 경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2) 가. 특정금전신탁업 도입(예정)에 따른 겸업 관련 사항 반영
나. 종속회사의 요구자본 측정시 간편법 적용

(라) 제2023년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 6월 23일

[안건 통지일 : 6월 16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4건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2]				
가. 1호안건 K-ICS 문서화 관련 신규지침(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FY'23.3월 자본적정성평가 결과, FY'23.3월 리스크 주요지표 모니터링 결과, FY'22.12월 ORSA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FY'23.3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현황 보고

2) 가. 시행세칙 개정으로 지급여력비율 관리 업무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서화

(마) 제2023년도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 : 8월 8일

[안건 통지일 : 8월 1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2건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2]				
가. 1호안건 위험관리 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K-ICS 부동산 집중위험 한도 설정(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해외대체투자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점검, FY'23.6월 대체투자 한도 관리 현황

2) 가. 선임계리사 제도 개선 대응, 조직개편 및 업무변경사항 반영
나. 부동산집중위험 관리를 위한 전체 익스포져 한도 신설

(바) 제2023년도 제6차 위험관리위원회 : 9월 19일

[안건 통지일 : 9월 1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3. 의결안건[1]				
가. 2호안건 해외원 재물보험 순보유한도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가. 23년 괌, 하와이 자연재해로 해외원 재물보험의 비비례특약담보 순보유한도 변경

(사) 제2023년도 제7차 위험관리위원회 : 9월 26일

[안건 통지일 : 9월 1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6건 특이사항없음			
3. 의결안건[2]				
가. 1호안건 FY'23 위험관리전략 변경(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조립보험 및 해외수재 순보유한도 변경(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FY'23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부담한도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FY'23.6월 자본적정성평가 결과, FY'23.6월 리스크 주요지표 모니터링 결과, FY'23.6월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FY'23.6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현황 보고,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적인 위험평가 결과 보고, 금융복합기업집단 리스크 점검결과 보고

2) 가. 시장환경변화 대응 위험한도 재배분 및 운용한도 변경

나. 자산운용부문 조직개편 반영

다. 조립보험 계약 입찰을 위한 예외승인 및 해외수재 재보험 출재율 변경

라. 손보 위험부담한도 변경사항 반영

(아) 제2023년도 제8차 위험관리위원회 : 12월 22일

[안건 통지일 : 12월 1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5건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2]				
가. 1호안건 FY'24 위험관리전략(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K-ICS 비례성원칙 적용(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FY'24 외화유동성 위험관리전략(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금융복합기업집단 공동투자 위험관리 프로세스(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FY'23.9월 자본적정성평가 결과 보고, FY'23.9월 리스크 주요지표 모니터링 보고, FY'23.9월 대체투자 한도 관리현황 보고, FY'23.6월 ORSA 모니터링 보고, FY'22.9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현황 보고

2) 가. FY'24 전사 위험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위험자본 배분(안) 및 목표 수립
나. 인수예정 해외 종속보험회사(VNI, BSH) 요구자본 산출시 간편법 적용
다. FY'24 전사 위험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외화유동성 위험관리 목표 수립
라. 공동투자 사전검토 절차 신설

(3) 교육.연수 실시내역

사외이사 성명	최정호	정채웅	전선애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3.5.26일 -내용 : 新제도 下 ALM전략방향 등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	1	1	1

(4) 평가

회사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 평가를 통해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위원회 규모 및 구성비율의 적정성, 개최시기 등 소집절차, 안건이행률 및 위원출석률에 대한 평가와 안건 부의·심의 적정성, 의사결정 시 윤리적·사회적 책임 고려 여부,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적정성 등입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험관리위원회 자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설문지 작성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험관리위원회 평가결과

구분	①구성	②역할과 책임	③운영	총 계
평가 결과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 출석률 100% ▪ 이행률 100%	위원회 위원 평가[주]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주] 안건 심의•의결의 적정성,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의 적정성,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적정성, 의사결정 시 사회/환경적 이슈 및 공익성 고려 여부

8. 경영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지점의 신설·이전·폐쇄, 거래은행과의 당좌 개설 및 연장,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결의된 결과를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사가 통지 받은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구성(경영위원회위원)

성명	사내(상임/비상임)사외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정종표	사내이사(상임)	위원장 ('23.3.24~)	'21.03.26	'24.03.26
남승형	사내이사(상임)	위원	'23.03.24	'26.03.24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3년에는 총 2회의 경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지배인 선·해임 및 변경의 건, 일중차월 및 당좌차월 약정 갱신의 건, 지점 신설 및 변경의 건 등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2)회의 개최내역

(가) 제57기 제1차 경영위원회 : 3월 3일 [안건통지일 : 3월 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정남	정종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1]			
가. 1호안건 신한은행 일중차월 및 당좌차월 약정 갱신의 건	찬성	찬성	가결

가. 거래은행과의 일중차월 및 당좌차월 약정 갱신

(나) 제57기 제2차 경영위원회 : 12월 7일 [안건통지일 : 12월 6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종표	남승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1]			
가. 1호안건 일중차월 갱신의 건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지배인 선임, 해임 및 변경의 건	찬성	찬성	가결

가. 거래은행과의 일중차월 약정 갱신

나. 인사발령 등에 따른 지배인 선/해임 및 변경

(3) 평가

회사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 평가를 통해 경영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경영위원회가 회사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위원회 규모 및 구성비율의 적정성, 개최시기 등 소집절차, 안건이행률 및 위원출석률에 대한 평가와 안건 부의·심의 적정성, 의사결정 시 윤리적·사회적 책임 고려 여부,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적정성 등입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경영위원회 자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설문지 작성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경영위원회 평가결과

구분	①구성	②역할과 책임	③운영	총 계
평가 결과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 출석률 100% ▪ 이행률 100%	위원회 위원 평가[주]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주] 안건 심의•의결의 적정성,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의 적정성,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적정성, 의사결정 시 사회/환경적 이슈 및 공익성 고려 여부

9. ESG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사 지속가능경영 방향성 설정 및 ESG분야별 주요사안을 심의 등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회사의 ESG경영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전환 전략 등) 승인, ESG경영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결의된 결과를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사가 통지 받은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구성(경영위원회위원)

성명	사내(상임/비상임)사외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최정호	사외이사	위원장	'23.03.26	'24.03.26
정종표	사내이사(상임)	위원	'21.03.26	'24.03.26
남승형	사내이사(상임)	위원	'23.03.24	'26.03.24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3년에는 총 3회의 ESG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2023년 지속가능경영통합보고서 발간 보고 및 '24년 환경경영 추진안 등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 강화 분위기에 맞춰 향후 ESG 추진방안에 회사의 기후 대응 방안(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탄소배출량 산정, 넷제로 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회의 개최내역

(가) 제57기 제1차 ESG위원회 : 3월24일 [안건통지일 : 3월 1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정호	정종표	남승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1]				
가. 1호안건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가. 최정호 사외이사를 ESG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나) 제57기 제2차 ESG위원회 : 8월 8일 [안건통지일 : 8월 1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정호	정종표	남승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2건[1]				
4. 의결안건	-			

1) ESG경영성과와 재무적 경영성과 등을 통합한 '지속가능경영통합보고서'의 발간 보고, 글로벌 ESG평가(S&P, CDP 등) 참여 보고

(다) 제57기 제3차 ESG위원회 : 12월22일 [안건통지일 : 12월 1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정호	정종표	남승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1]				
가. 1호안건 지속가능경영 관련 중대성 이슈(ESG Materiality) 선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24년 환경경영 추진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가. '24년 ESG경영의 핵심이슈를 선정
나. '24년 환경경영 추진 및 ESG경영전략(안) 승인 등

(3) 평가

회사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 평가를 통해 ESG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ESG위원회가 회사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ESG위원회의 구성,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위원회 규모 및 구성비율의 적정성, 개최시기 등 소집절차, 안건이행률 및 위원출석률에 대한 평가와 안건 부의·심의 적정성, 의사결정 시 윤리적·사회적 책임 고려 여부,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적정성 등입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ESG위원회 자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설문지 작성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ESG위원회 평가결과

구분	①구성	②역할과 책임	③운영	총 계
평가 결과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 출석률 100% ▪ 이행률 100%	위원회 위원 평가[주]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주] 안건 심의•의결의 적정성,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의 적정성,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적정성, 의사결정 시 사회/환경적 이슈 및 공익성 고려 여부

10.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연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11.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1]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성명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최정호	▪최정호 사외이사 후보자는 '22년 中 감사위원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과 ESG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구현 및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해왔습니다. ▪2023년에도 해외보험사 및 DB자산운용 지분인수 관련 안건과 위험관리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의견 개진 등을 통해 지배구조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최정호 사외이사 후보자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 평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채웅	▪정채웅 사외이사 후보자는 '22년 中 감사위원장과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및 산하 소위원회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DB자산운용과의 내부거래 관련 안건 등 금융산업과 감독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검토의견 개진 등을 통해 지배구조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정채웅 사외이사 후보자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 평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선애	▪전선애 사외이사 후보자는 보험·금융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금융규제 등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및 산하 소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DB자산운용 지분취득 및 LDI자산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안건과 보수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의견 개진 등을 통해 지배구조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선애 사외이사 후보자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 평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정채웅

<별첨 2>

2023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DB손해보험주식회사)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10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2010년 9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 현재 보수위원회 위원은 2023년 3월 2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규정 제2조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총 3인의 사외이사(전선애, 최정호, 정채웅)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선애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의 대표로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3명은 현재 당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로, 보수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위험관리 측면이 심도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전선애	위원장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X	(前)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前)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現)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장
최정호	위원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X	前 한국보험학회 이사 前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자문위원 前 프루덴셜생명보험 사외이사
정채웅	위원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X	前 재정경제부 대외협력대사실 과장 前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실장 前 보험개발원 원장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전선애	사외	위원장	2023.3.24	2024.3.24
최정호	사외	위원	2023.3.26.	2024.3.26.
정채웅	사외	위원	2023.3.25.	2024.3.25.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진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성과보수체계를 설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57기 제1차 보수위원회 및 2023년 4월 17일 개최된 제57기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임원보수규정』상 성과보수 적용대상 및 지급 방식 등 성과보수 체계 전반을 확인하였으며, 동 규정에 따라 임원별 성과보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임원에 대한 보수 및 지급방식은 아래 보수의 세부정보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57기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작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의결하였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보수위원회가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 4월 17일 개최된 제57기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총 보수 중 기본보수와 성과보수의 비중, 성과보수의 평균 이연기간의 적정성을 집중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全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원보수규정』상의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 ·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상무)의 총 보수는 기본보수와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보수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성과보수의 평균 이연기간이 기존 3년이 적정하다는 것을 심의하였고,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2022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 · 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57기 제1차 보수위원회를 통해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소집방법, 결의방법, 주요현황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절차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아래 보수위원회의 보수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 4월 17일 개최된 제57기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 상황, 특히 손익 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우 적정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 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 보수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 4월 17일 개최된 제57기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 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① 국내 : 회사 내 모든 실/부문에 적용
② 해외 : 해외영업 지점에 적용(단, 현지채용인은 제외)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성과보수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5조에 보수위원회에서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57기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대상자 등을 규정한『임원보수규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상무를 성과보수 임원의 범주로 하였습니다(단,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 단, 투자금융,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 딜링 등 금융투자의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없는 바,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은 없다고 판단되어 성과보수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에 있어 유효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2024년 중 성과보수 대상자에 대한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현재 전선애 사외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3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회의 부의 안은 안건 부의 위원이 설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련 배석임원 또는 부서장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당사 보수위원회는 성과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성과보수 및 지급방식 결정,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3회의 보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들의 참석률은 100%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보수위원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2023년 3월에 소집된 제57기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는 2022년 성과보수체계 연차보고의 건을 승인하였고, 2023년 3월 주주총회 이후 소집된 제57기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는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승인하였으며, 2023년 4월에 소집된 제57기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는 2022년 성과보수 결정 및 지급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3년도 제57기 제1차 보수위원회 : 2023. 3. 3 (금) 09:30 [안건 통지일 : 2023. 2. 2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채웅	최정호	문정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2022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23년도 제57기 제2차 보수위원회 : 2023. 3. 24(금) 12:40
[안건 통지일 : 2023. 3. 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전선애	최정호	정채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23년도 제57기 제3차 보수위원회 : 2023. 4. 17(월) 15:00
[안건 통지일 : 2023. 4. 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전선애	최정호	정채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2022년 성과보수 결정 및 지급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추가 공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성과보수 체계 점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특별공로금 지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평가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연1회 전년도 보수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그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보수위원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안건 제공 수준, 위원회 개최 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보수위원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회사 전체의 주요 성과측정은 재무지표(세전순이익, 손해율, M/S 등), 고객지표(유지율, 고객만족도, 민원발생건수 등), 프로세스지표(RBC, 경영혁신, PA도입 등), 학습성장지표(글로벌 우수인력, 핵심직무 관리인력, 직원만족도 등)를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의 경우 전사 성과측정 지표 중 관할 사업부문과 관련한 지표(예> 개인사업부문 임원의 경우 M/S, 유지율, PA도입 등을, 보상서비스실 임원의 경우 손해율, 고객만족도, 민원발생건수 등) 및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성과측정 지표와 전략과제 이행률 등을 그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사업년도 개시시 임원별 성과측정 지표를 확정하며,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써 해당 임원의 개별 KPI 및 비계량 부문의 전략과제 이행률 등을 통해 이를 개인 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회사 주가와 연계하여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시에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임원이 임무를 해태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 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수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회사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정직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 경우 및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연지급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시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이연지급분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지급 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다만, 그 이연지급액은 성과평가연도의 평균주가(사업년도 중 매월 말 주가의 평균)에 따라 변동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보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격려금(P.I.)은 고정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임원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보수는 변동보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과 회사 주가 연계 지급으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결정된 성과보수 중 60%는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주식수로 확정하여 향후 3년간 균분하여 배정한 후 이연지급시점의 회사 평균주가(사업년도 중 매월말 회사주가의 평균)와 연계하여 지급합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액 중 40%는 결정되는 시점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 60%는 3년간 균분하여 이연지급(1차 년도 20%, 2차 년도 20%, 3차 년도 20%)하되 장기성과와 연동할 수 있도록 회사주가 연계방식으로 지급합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2000년부터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의 성과주의 고취를 위하여 성과에 연동한 특별보상(생산성향상격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일반직원에 대하여 성과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봉은 직원의 역량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합리적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연봉산정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기함으로써 임금지불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8조 제5항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3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경우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23년에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비율(A/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전년도 (2022년)	3,969	12,959	0.31	4,556	0.87
당해년도 (2023년)	4,337	20,253	0.21	4,628	0.94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는 2023년 IFRS 17 기준 산정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등기	미등기	P직급 (수석)	A직급 (책임)	다이렉트 영업	기타
전년도 (2022년)	보수총액	16.8	148.2	2,056.8	106.9	517.0	1,123.0
	성과보수액	0.47	10.8	0	0	0	0
당해년도 (2023년)	보수총액						
	성과보수액	'작성 중' 23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지급 확정시 공시 예정					

* 보수총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으로 22.12.31 재직기준임

* 성과보수액은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기본급	성과보수액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22년)	임원	27	80.3	11.3	4.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0
당해년도 (2023년)	임원	'작성 중'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3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지급 확정시 공시 예정			

*수급자는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인원이며, 기본급은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임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 상품	기타
전년도 (2022년)	임원	11.3	7.1		4.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당해년도 (2023년)	임원	'작성 중'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3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지급 확정시 공시 예정				

* 당사의 성과보수 지급방식은 성과보수 결정 당해연도에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여 60%를 회사주가연계 방식으로 지급

* 회사주가연계 방식은 성과측정 대상기간의 매월 말 회사 주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잔여 60%를 주식으로 환산한 후 익년부터 3년간 20%씩 균분하여 지급시점의 직전 회계연도 평균주가를 곱하여 지급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22년)	임원	21.8	9.4	12.4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당해년도 (2023년)	임원	'작성 중'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3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지급 확정시 공시 예정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2년)	임원	21.8			21.8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당해년도 (2023년)	임원	'작성 중'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3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지급 확정시 공시 예정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22년)	임원	21.8	4.2	9.1	6.1	2.4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당해년도 (2023년)	임원	'작성 중'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3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지급 확정시 공시 예정					

주1)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주2) 해당년도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 기준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증감액	직접적 조정	간접적 조정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주1)]
전년도 (2022년)	임원	1.7		1.7	20.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당해년도 (2023년)	임원	'작성 중'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3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지급 확정시 공시 예정			

주 1)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2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당해년도 (2023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정 관

2023.3

DB손해보험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 2

제 2 장 주 식 및 사 채 ---------- 2

제 3 장 주 주 총 회 ---------- 8

제 4 장 이사, 이사회, 위원회 ---------- 10

제 5 장 감사위원회 ---------- 14

제 6 장 계 산 ---------- 16

부 칙 ---------- 1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DB 손해보험주식회사라 칭하며, 이하 "회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DB INSURANCE CO., LTD.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2.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3.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외의 업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상법상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의 방법)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dbin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및 사 채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1 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 주로 하고 1 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6 조 (설립당시의 발행주식수)

회사가 설립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500,000 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및 주식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 년 이상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8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사업의 추진,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단, 1 인에게 부여하는 신주인수권은 신주발생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5 를 한도로 한다.
3. 액면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단, 1 인에게 부여하는 신주인수권은 신주발생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5 를 한도로 한다.

②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그 외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①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제①항 제 2 호 및 제 3 호, 제②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정한다.

⑥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⑧ 회사는 제①항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8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시 이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성과목표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또는 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내로 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부여결의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 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⑨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결의일로부터 2 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부여결의일로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부여결의일로부터 2 년내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⑪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결의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단, 임원승진 또는 관계사 전배로 인한 퇴임・퇴직은 본인의 의사로 인한 퇴임・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8 조의 3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 및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9 조 (시가발행)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의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을 기준일로 하고, 기준일의 익일부터 1 개월간 권리에 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회사가 매결산기 최종일의 2 주간 전에 이사회의 결의로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익일부터 1 개월간 권리에 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거한 기준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준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④ 제 10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 13 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 11 조 제 1 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4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29 조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①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의 상법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통지·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6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7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29 조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9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주식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0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 개최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 한다.

제 4 장 이사, 이사회, 위원회

제 24 조 (이사의 수)

① 회사는 3 인 이상 10 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그 중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최소 3 인 이상으로 한다.

② 회사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외이사는 제 33 조에 의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25 조의 2 (사외이사의 자격조건)

①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3.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 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자
4. 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기업의 상근 임직원
6. 회사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 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7. 회사에서 6 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 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자

제 26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단, 사외이사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② 이사의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7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4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4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2 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의 순 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9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 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위 각 호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회사의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및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0 조의 2 (이사회의 소집과 의장의 선임)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 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상법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2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3 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경영위원회를 두며,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0 조, 제 30 조의 2, 제 31 조 및 제 3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4 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별도로 정하는 경영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

제 35 조 (경영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의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경영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영임원회 위원은 이사회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경영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경영임원회의 구성,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 장 감사위원회

제 3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 1 명 이상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그 주주는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37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③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①항 내지 제⑥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38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 39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①항 각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부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41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 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2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①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2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①항의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 43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①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정관은 1968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현물출자) 당사의 설립에 있어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자 : 발기인 전원
2. 출자의 목적인 재산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6 번지의 25	垈 69 坪 3 合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21 번지의 8	垈 193 坪 1 合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21 번지의 9	垈 194 坪 4 合
	計 456 坪 8 合

3.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 90,972,104 원
4. 부여하는 주식보통주식 90,972 주

③ (설립비용) 당사의 설립비용은 당사의 부담으로 하며 최초의 3 개 영업년도에 분할 상각한다.

1968 년 10 월 10 일

발기인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 가 19 번지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문 옥 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 가 43 번지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최 성 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75 번지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치 복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4 가 64 번지의 1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 필 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88 번지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 호 상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3 가 11 번지의 3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최 병 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 가 199 번지의 50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동 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 가 8 번지의 1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손 영 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 가 3 번지의 1	동방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임 헌 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77 번지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시 경

부 칙

이 정관은 1974 년 6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9 년 11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정관은 198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2 년 1 월 1 일부터 1982 년 3 월 31 일까지는 이를 1 영업년도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정관은 1983 년 5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16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20 조 제 1 항 및 제 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 년 1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정관은 1985 년 5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8 년 5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 년 5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 년 5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 조(상호) 상호변경은 199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은 때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의 2, 제 11 조, 제 22 조, 제 23 조, 제 25 조, 제 29 조의 2, 제 30 조, 제 31 조, 제 34 조, 제 39 조의 개정 규정은 199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때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때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때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때로 부터 시행한다.

②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2001 년 4 월 1 일) 당시 동법 제 189 조의 2(자기주식의 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 41 조의 2(주식의 소각)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증권거래법 제 189 조 제 4 항 및 제 5 항을 적용한다.

1. 증권거래법 제 189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할 것.
2.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3.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증권거래법 제 189 조 제 3 항 제 2 호에서 정하는 범위이내일 것.
4. 소각하고자 하는 주식은 취득 후 6 월이 경과할 것.

부 칙 (2002.5.30)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때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6.11)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때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 년 6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10 년 6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25 조의 2 및 제 26 조의 제①항의 후단은 본 정관 시행 후 선임 또는 연임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12 년 6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39 조는 2013 년 4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2013 사업년도는 4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 년 3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 년 3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 년 3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7 조, 제 10 조, 제 12 조의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2019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

2020. 3.

DB손해보험주식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지배구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주와 투자자, 보험계약자 및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內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범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원' 이란 이사, 감사, 상법 상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 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 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정 및 개정)
① 지배구조내부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 등

제4조(이사회의 구성)
① 회사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의 순서 또는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해

지명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6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회사운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며 세부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1. 정관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 등 경영에 관한 사항
4. 차입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결과
2. 주요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이사의 자격요건 등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지배구조법』제5조, 기타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하며, 경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지배구조법』제5조와 제6조, 기타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의식, 책임감 및 충실성 등을 갖춘 것으로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제8조(이사의 선임과 해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지배구조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의 직을 상실한다.
⑤ 이사는 임기의 만료, 사임 의사의 표시,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합산하여 9년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② 이사의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건전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4장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등

제1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일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자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통지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상법 415조의2 제3항)' 및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상법

제397조의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하며,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에 의거한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이사의 의결권 수는 출석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임원회를 두며, 경영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를 두며,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5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은 다음과같다

1.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 선임원칙의

수립, 점검, 보완
2. 임원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최고경영자(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규범에서 같다) 및 사외이사 후보군의 관리 및 후보 검증
4. 그 밖에 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6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같다

1.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내 정보에 대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제장부 증빙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6. 자회사에 대한 조사
7.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④ 감사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7조(위험관리위원회)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같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수위원회)

① 보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② 보수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배구조법 제22조에 관한 사항의 결의
2. 그 밖에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보수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보수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9조(경영위원회)

① 경영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경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점의 신설, 이전 및 폐쇄
2. 지배인의 선·해임
3. 거래은행과의 당좌 개설 및 연장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

③ 경영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20조(이사회 및 위원회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방법, 결의 및 보고안건의 적정성, 결의 안건 이행 여부,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수행 적정성 등에 대해 연 1회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업무는 이사회 운영 담당부서에서 지원한다.

③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제21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지배구조법』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 규범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제1항 등에 부합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상근인 임원은 관련 법규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임원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건전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요 경영활동에 참여한다.

② 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 또는 준법감시인 등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 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임원 중 업무집행책임자(경영임원을 제외한다.)는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단,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임원 해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임기(고용계약기간) 만료
2. 의원 사직
3. 인사관계 규정 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이사 총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통해 해임한다.

제24조(임원 및 후보자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임원 및 후보자에 대하여 사내외 교육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임원 및 후보자에 대하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회사가 정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회사에서 정한 외부전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① 보수위원회는 임원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정한다.

②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보수에 반영한다.

제26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고정보수, 성과보수 등으로 구분하며, 보수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최고경영자

제27조(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계획 및 절차를 정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내부규정의 제개정 등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최고경영자의 선임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개시사유, 개시시기, 평가기준, 승계절차 및 해임사유 등을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등에 반영한다.

제28조(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배구조 및 인사 담당부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29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는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전·경영이념에 대한 이해, 보험업에 대한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공익성 및 회사가치의 증대를 통한 이해관계자 이익 추구 등에 부합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30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교육 결과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선정된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②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의결하고, 후보자가 등기이사로 신규선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③ 추천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은 관련법령 및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최고경영자 비상 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가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등에서 정한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정관에 따라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② 최고경영자 비상 경영승계에 대한 세부내용은 관련법령 및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2조(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① 제29조에 따른 지원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발굴·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 관리
4. 그 외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업무

②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현황을 연 1회 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3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34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 등 주요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주요 경영진의 임기와 선임 및 해임 등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주요 경영진 등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한다.

부 칙

이 규범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조항은 동 법 시행 후 신규 선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범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규정

2020. 3.

DB손해보험주식회사

이 사 회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경영임원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의 순서 또는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해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이사가 아닌 자의 출석 등)

의장은 이사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 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8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 일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자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통지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며,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부의사항

제 10 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재무제표의 승인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담당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7. 주식의 소각
8. 주요 사업계획
9. 이사회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규정, 지배구조 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③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모집
3. 준비금의 자본 전입
4. 전환사채의 발행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6. 차입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1 조 (감사위원회의 보고사항)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경영임원회

제 12 조 (경영임원회)

회사는 경영임원회를 두어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집행을 담당하게 한다.

제 6 장　기타사항

제 13 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③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14 조 (간사)

① 의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68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0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2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3 년 4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0 년 12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 년 7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 년 5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년 7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년 9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 년 5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6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년 1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년 2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년 8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년 3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규정

2019. 3.

DB 손해보험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 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감사보조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이사회,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 4 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제장부 증빙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6. 자회사에 대한 조사
7.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5 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명정대한 감사의 실시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임의 공개나 누설 및 직무목적외 사용 금지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른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직무 수행
4. 감사사항에 대한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 확보

제 6 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조(보고)

①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 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8 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 명 이상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 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에 상근감사위원을 두는 경우 그 대우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9 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위원회의 권한 위임)
①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감사담당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감사담당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의 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감사담당임원의 추인을 받는다.
③일상감사사항 및 제 14 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사담당임원에 위임된 사항은 감사담당임원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④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감사담당임원이 공람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1 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당 1 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12 조(소집절차)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10 조제 3 항을 준용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3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부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의사항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6)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감사에 관한 사항

(1) 감사계획의 수립

(2)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3) 감사보조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정과 해임요청

(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6)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7)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8)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라. 기타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심의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3)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4)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5) 경영진이 정한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6) (삭제)
(7)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8) 핵심감사 항목 선정

나. 기타
(1)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 및 보고

제 17 조(감사담당임원에 대한 위임)

①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담당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보조조직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8 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감사담당임원은 제 17 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이외에 중요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19 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

제 20 조(감사보조조직)

①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②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단위의 감사보조조직(이하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제 21 조(감사록의 작성)

①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2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년 7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②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은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신규로 선임되는 감사위원부터 적용한다.

제 2 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6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3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23. 1.

DB손해보험주식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①위원회는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공정한 검증을 통해,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다른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소집권자)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소집절차)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단, 감사위원 후보자는 위원 총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 총 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가 선임할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2. 대표이사(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자격기준 적합여부 검증 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임원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장 보 칙

제12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2023. 2)

DB 손해보험주식회사

리스크관리본부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제정 및 개정)

제 2 장 구성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제 4 조 (위원장)
제 5 조 (지원조직)

제 3 장 회의
제 6 조 (소집)
제 7 조 (의결방법)
제 8 조 (심의•의결사항)
제 9 조 (의사의 운영)
제 10 조 (의사록)

제 4 장 보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 16 조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등에 따라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 수립 등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할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법령 및 사규의 개정에 따른 변경, 또는 단순한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변경, 기타 이에 따른 단순한 편제의 자구의 정리 등 이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구 성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이사 3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위원회 참석자는 위원회 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위험관리책임자 및 위원장이 배석을 요청한 관련부서 임직원으로 한다. 단, 의결권은 위원회 위원 에게만 부여된다.

제 4 조 (위원장)

①지배구조법 제 16 조 4 항에 따라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위원장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지원조직) 위험관리 전담조직이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당 1 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1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일 구두 통보할 수 있다.

제 7 조 (의결방법)

①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①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②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1. 지급여력비율, 순자산가치, 당기손익 등을 고려한 위험 자본량 결정 및 배분
2. 자산/부채 포트폴리오 전략 결정
3. 공시이율 등 수준 결정

특히,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험관리 기준"을 따름

③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④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⑤ 파생금융거래 전략

⑥ 재보험 운영전략의 수립 및 변경

⑦ 위험관리전담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⑧ 위험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 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⑩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자

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⑪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 지점의 상황을 고려)에 관한 사항
⑫「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제 10 조 제 2 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⑬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9 조 (의사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총괄 책임자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②위원회의 부의 안은 위험관리책임자가 설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련 임직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험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에 주요사항 등을 보고할 수 있다.

제 10 조 (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연수) 사외이사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관련 연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연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2 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2항 및 제3조의 1항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보수위원회 규정

DB손해보험주식회사

보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등기 이사 3인으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회 외의 관련부서 임직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원장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 중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1.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 대상자 결정
2. 성과보수 대상자별 보수체계 마련
3. 성과보수 대상자별 보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4.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제6조 (소집)
① 위원회는 반기 1회당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총괄 책임자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② 위원회의 부의 안은 안건 부의 위원이 설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련 배석임원 또는 부서장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인사담당임원을 위원장, 관련부서 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보수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보수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위임 받아 충분히 사전 검토한 후 위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안건으로 상정 하거나 또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보고 한다.
⑤ 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영위원회규정

2021. 3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경영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규정에 근거하여 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이사회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대하여 관리,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 (위원 구성)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관계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의 출석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인 자만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3장 회 의

제6조 (소집)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 ②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③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언제든지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야 한다.

제7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긴급사항)

①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경위와 집행사항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이사회와의 관계)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결의사항을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4장 부의사항

제10조 (부의사항)

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지점의 신설, 이전 및 폐쇄 등

② 지배인의 선·해임

③ 거래은행과의 당좌 개설 및 연장

④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

제5장 기타사항

제11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최고경영자 승계규정

2020. 3.

DB손해보험주식회사

최 고 경 영 자 승 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표이사(이하 '최고경영자'라 한다)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의 제정, 개폐 등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하여 1 항의 심의, 의결을 제외한 사항을 이사회 산하 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등

제 4 조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상의 임원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또는 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객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증진 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가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제 5 조 (후보군 관리)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발굴하고,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원부서로 선정하여, 제 1 항의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지원부서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지원과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 및 검증을 수행하며, 연 1 회 이상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영승계 절차

제 6 조 (경영승계 개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 또는 최고경영자의 해임(사임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의 유고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정관 제 29 조에 의거 직무대행자가 경영승계 절차 완료 시 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승계 개시 시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 받은 후, 최단시일 내에 최종 후보자 선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대행자,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정 이후,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한다.

제 8 조 (비상상황시 경영승계 절차)

① 최고경영자가 건강상의 사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제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하 '비상상황'이라고 한다), 회사는 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체없이 지정하고, 경영승계 개시를 할 수 있다.

②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영승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년 12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ESG위원회규정

2021. 3

DB손해보험주식회사

ESG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성화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기반한 경영활동의 주요사항을 총괄하는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여 회사의 ESG경영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소집)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 ②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③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언제든지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야 한다.

제5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구성)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의 출석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인 자만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 (부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ESG경영의 추진방향 설정 및 관련 주요 정책의 승인

② ESG경영 관련 규정의 제·개정

③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보고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한다.

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② ESG 관련 경영성과 및 대외평가결과 보고

③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內 部 統 制 基 準

2023. 05.

DB 손해보험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제정 및 변경)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

제 5 조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의 운영)
제 6 조 (내부통제 조직 및 업무위임 등)
제 7 조 (준법감시인)
제 8 조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의무)
제 9 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제 10 조 (준법감시인의 임기 및 지위)
제 11 조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제 12 조 (준법감시인의 업무)
제 13 조 (준법감시인과 이사회)
제 14 조 (대표이사)
제 15 조 (내부통제위원회)
제 16 조 (준법감시인과 임・직원)
제 17 조 (준법감시부서)
제 18 조 (준법감시담당자)

제 3 장 법령준수를 위한 임직원 행동규범

제 19 조 (일반원칙)
제 20 조 (사내 행동규범)
제 21 조 (대외 행동규범)
제 22 조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
제 23 조 (해외근무 임직원의 행동규범)

제 4 장 자산운용

제 1 절 일반원칙 등

제 24 조 (일반원칙)
제 25 조 (대출의 운용)
제 26 조 (유가증권의 운용)
제 27 조 (외화자산의 운용)
제 28 조 (자산운용의 위탁)
제 29 조 (부동산의 운용)
제 30 조 (자산운용의 위험관리)
제 31 조 (자산운용 임직원의 준수사항)
제 32 조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 33 조 (신탁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 34 조 (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제 35 조 (이해상충의 방지)
제 36 조 (자산의 무상양도 등)

제 2 절 정보교류의 차단
제 36 조의 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부서)
제 36 조의 3 (정보교류차단의 기준 및 절차)
제 36 조의 4 (예외적 교류의 요건 및 절차)
제 36 조의 5 (정보교류통제 제도의 운영)
제 36 조의 6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제 36 조의 7 (계열회사 등 제 3 자와의 정보 교류)

제 5 장 보험계약관리와 보험계약자 보호

제 1 절 보험모집
제 37 조 (일반원칙)
제 38 조 (모집의 자격 및 제한)
제 39 조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40 조 (모집위탁에 대한 임직원의 의무)
제 41 조 (보고 및 조치)
제 42 조 (역선택 방지)
제 43 조 (4 대 기본지키기)
제 44 조 (계약업무관련 구상조치)

제 2 절 보험안내자료 등
제 45 조 (보험광고 방법 및 절차)
제 46 조 (일반원칙)
제 47 조 (작성 및 사용)

제 3 절 보험계약관리
제 48 조 (일반원칙)
제 49 조 (계약심사 및 보전)
제 50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방지)

제 4 절 소비자보호업무
제 51 조 (일반원칙)
제 52 조 (업무처리)

제 5 절 퇴직연금업무
제 53 조 (일반원칙)
제 54 조 (금지행위)

제 6 장 의사결정구조의 효율적 구축

제 55 조 (의사결정구조의 최적화)
제 56 조 (경영정보 전달시스템의 구축)
제 57 조 (개인[신용]정보 보호 등)
제 58 조 (문서관리)
제 59 조 (인터넷 운영)
제 60 조 (보험계리 업무)

제 7 장 내부통제관리 프로그램

제 61 조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제 62 조 (윤리・준법서약서)
제 63 조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의 확인)
제 64 조 (내부통제기준 위반자 처리 및 재발방지 조치)
제 65 조 (동기부여)
제 66 조 (내부통제기준 교육 및 자문)
제 67 조 (내부고발제도)
제 68 조 (명령휴가제의 운영)
제 69 조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제 70 조 (고위험사무 직무분리기준)
제 71 조 (영업점 등 자체점검)

부 칙

별첨 1. 윤 리 ·준 법 서 약 서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 24 조에 따라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정도경영·윤리경영을 통한 사회의 신뢰 및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에게 적용한다.

② 회사의 모든 업무와 거래행위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의 내부규정(정관 제외)이나 지침은 이 기준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통제”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3.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4. “준법감시”란 회사 직무수행시 임직원의 법령 및 선관의무 준수를 위한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의미한다.
5. “준법감시체제”란 내부통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효과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6.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법령”이란 상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8. ”정보차단벽”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제정 및 변경)
회사가 이 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법령 및 사규의 개정에 따른 변경, 단순한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변경, 기타 이에 따른 단순한 편제나 자구의 정리 등 이 기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

제 5 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의 운영)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직무간 상호견제 및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6 조(내부통제 조직 및 업무위임등)
①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다.
③ 회사는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 7 조(준법감시인)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이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 8 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 제출 요구

3.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 내부통제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해 유관 부서에 시정 건의

5.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감사위원회 앞 제재의견 표명

6.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7.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 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8.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9. 법령에서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규정한 업무

10. 기타 이사회.대표이사.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준법감시인의 임면)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6 조 ①항에 따른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사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준법감시인 임면시 관련 사실을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준법감시인의 임기 및 지위)
①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 년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② 준법감시인의 지위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임원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한다.

제 11 조(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겸영업무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준법감시인이 제 2 항 각 호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12 조(준법감시인의 업무)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입안
가.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안)의 이사회 부의
나. 내부통제관리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다. 내부통제체제·제도의 운영 총괄
2. 내부통제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시정요구
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다.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보수집
3.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개정 및 운영
4. 법률리스크관리 체제 수립 및 운영
가. 회사 각 부문의 업무추진 및 경영정책과 관련된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총괄적 지원 및 조정
나. 전사적 법률리스크 관련업무의 통합관리
다.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및 연구
라. 법률리스크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마. 기타 법률문제 및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 지원
5.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6. 자금세탁방지업무,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점검 및 모니터링
7.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이해상충방지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8.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자문
9.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감시
10.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 교육
11.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지원
12. 준법감시결과의 기록 유지 및 보고

② 제 1 항제 9 호에서 규정한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감시 업무는 법규준수 또는 내부통제측면에서의 사전검토를 말하며,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준법감시인직무규정(이하 직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 13 조(준법감시인과 이사회)

①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내부통제 기준의 제·개정을 포함한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통제하며,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② 이사회는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고유업무는 준법감시인이 수행할 수 없다.

제 14 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 . 유지 .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직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매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내부통제위원회)
① 회사(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는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매반기별 1 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6 조(준법감시인과 임·직원)
① 경영진(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포함)은 준법감시인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영진은 회사 설립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유지·운영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경영진은 조직내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중간관리자(부서장 또는 팀장)는 각 업무분야 내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시행하고 직원들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내부통제에 대한 1 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규, 내부규정 및 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준법감시부서)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직속으로 준법감시부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②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구성하되 그 세부내용은 직무규정에 따른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보직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 11 조의 준법감시인의 독립성확보 및 겸임금지에 관한 규정은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에게 준용한다.

제 18 조(준법감시담당자)
① 준법감시인은 효율적인 준법감시업무를 위해 일정한 조직단위로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이하"준법감시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담당자는 관련부서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자 또는 직하급자로 선임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결정에 따라 그 외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제외한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담당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직무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법령준수를 위한 임직원 행동규범

제 19 조(일반원칙)
① 모든 임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된 제반 법령과 감독규정 및 사규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열람 또는 참조할 수 있도록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대외거래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이미 법률자문을 받은 사안과 동일한 사안이거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친 동종업계의 공통된 거래방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거래 발생전 충분한 법률적 검토 또는 법률자문을 받아 그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보험업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업무수행시 사회적 규범이나 시장규율에 따른 상식과 선의의 판단에 의해 공정・건전・투명하게 하여야 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인 업무를 취급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④ 모든 임직원은 고객의 편리 및 정당한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면서 고객과의 거래를 친절・공정・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보험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을 갖추어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위반 등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사내 행동규범)
① 모든 임직원은 DB 인의 정신과 자세를 기본으로 회사의 방침과 정당한 업무상 지시명령을 수행하며, 고객가치 우선 원칙과 탐구하는 자세로 자기업무에 전념하여 업무개선과 능률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하며, 간부사원은 부하직원을 육성 지도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유용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금전관리가 항상 투명・적절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모든 임직원은 금융사고예방대책규준을 참고하여 항시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⑤ 모든 임직원은 고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지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가 됨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대외 행동규범)
① 모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연, 기타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며,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모든 임직원은 강연・기고・토론 등 외부활동에 있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공익에 반하는 언행을 삼가야 하며, 보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의 발굴 및 개선에 힘써야 한다.

제 22 조(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산출, 계약자 서비스 제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임직원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공정성・건전성 확립과 투자자의 신뢰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4 조 및 176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모든 임직원은 금융기관간 공동으로 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모든 임직원은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부정 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모든 임직원은 불공정행위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업무수행에 앞서 그 적정성 여부에 관해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⑥ 모든 임직원은 대주주 등과의 거래(보험업법 제 111 조, 116 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 조에서 정하는 거래)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등으로 제한하고, 그외 거래방식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내부 지침이 없는 경우 IT 구매 및 계약지침 또는 계약실무지침에 따른다.
⑦ 임직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자금세탁방지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여 회사에 불법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가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23 조(해외근무 임직원의 행동규범)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령 및 기타 주요 규범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업무에 관하여는 해외점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장 자산운용

제 1 절 일반원칙 등

제 24 조(일반원칙)
① 회사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용자산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제반 법규에서 정한 자산운용의 방법에 부합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법규에서 정한 각종 제한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고객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인식하고 자산운용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제 25 조(대출의 운용)
① 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리의 산정 및 운용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대출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대출규정에 따른다.

제 26 조(유가증권의 운용)
유가증권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유가증권운용지침에 따른다.

제 27 조(외화자산의 운용)

①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는 주식, 채권, 예금 등 외화표시 금융자산, 해외부동산 등 외화표시 실물자산과 이와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이 기준은 본사 및 현지법인에 위탁운용되고 있는 해외유가증권 및 해외거래에 수반되는 외환포지션에도 적용한다.
② 외화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유가증권운용지침에 따른다

제 28 조(자산운용의 위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5-14 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세부운용지침에 따른다.

제 29 조(부동산의 운용)
①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에 관한 업무는 토지, 건물 등과 이의 취득을 위해 건설중인 자산, 계약보증금,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 모든 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②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허용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③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개인(개인 및 법인, 부동산신탁회사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제 30 조(위험관리기준)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31 조(자산운용 임직원의 준수사항)
회사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령준수를 위한 임직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투자정보의 취득에 있어 제반 법규에 부합하고 윤리적으로도 적합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자신 또는 제 3 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2 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① 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투자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33 조(신탁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행사한다.

②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법 제 11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④ 회사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 2 항 및 제 3 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 2 항 단서는 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 2 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 114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법규등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_

제 34 조(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없이 중개회사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달리 위탁할 수 있다.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5 조(이해상충의 방지)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 또는 고객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0 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 2 항에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단 정보의 종류와 내용 및 정보제공의 목적 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원 및 직원 겸직·파견. 단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
③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한 경우에는 회의·통신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분기별 그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63 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 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분기별로 그 거래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자산의 무상양도 등)
회사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 · 교환 · 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절 정보교류의 차단

제36조의2(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부서)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생산·취득한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회사는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금융투자업의 종류, 업무특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 정보교류차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부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정보교류차단의 기준 및 절차)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가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 내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 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업무 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3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별로 사무 공간의 분리, 전산적 분리 또는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⑦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 및 제3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별 책임자'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⑧ 본 조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의4(예외적 교류의 요건 및 절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서(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서"라 한다)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서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 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의5(정보교류통제 제도의 운영)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은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을 보좌하여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교류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과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준수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은 정보의 예외적 교류 등에 대한 기록·유지 등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정보교류통제 제도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의6(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① 부서별 책임자는 소속 부서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부서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② 부서별 책임자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서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정보별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본 조의 책임소재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의7(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① 회사는 계열회사 등 제 3 자(이하 "계열회사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제 36 조의 3 제 6 항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서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을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 3 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 3 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과 공동으로 수행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제 36 조의 3 은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 교류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험계약 관리와 보험계약자 보호

제 1 절 보험모집

제 37 조(일반원칙)
모든 임직원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38 조(모집의 자격 및 제한)
① 회사는 법규에서 정한 모집자격을 갖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한다.
② 회사는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그에 대한 수수료・보수 등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9 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제반 법규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0 조(보험모집)
회사는 보험법규에 따라 모집종사자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집종사자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 41 조(보고 및 조치)
모든 임직원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2 조(역선택 방지)
계약전 알릴 의무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청약은 해당 영업관리자가 계약 관련 제반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 43 조(4 대 기본지키기 등)
① 모든 영업관리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고 청약서부본 및 약관을 전달하도록 교육하며, 상품설명제 및 모집자 실명제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 보험 민원・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하여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44 조(계약업무관련 구상 및 제재조치)

보험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모집조직과 임직원의 고의 또는 부실관리로 인하여 회사가 보상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조직 또는 임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 구상조치하고,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조치 등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 한다.

제 2 절 보험안내자료 등

제 45 조(보험광고 방법 및 절차)

① 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 95 조의 4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험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보험상품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46 조(일반원칙)

보험안내자료를 작성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안내자료 내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한 보험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 유의하고, 각종 공시기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 보험관련 안내자료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정확히 작성・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7 조(작성 및 사용)

① 보험안내자료(보험안내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를 제작,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4-34 조와 관련한 "보험안내자료 등을 통한 보험상품의 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각 영업부·지점·사업단 등에서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해당 상품파트의 심사를 받아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험 및 대출관련 안내자료(신문, 방송, 통신망을 통한 각종 홍보물 포함)를 사용하기에 앞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관계여부를 정확히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즉시 등재하여야 하며, 예금보호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관계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사후 확인 및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①항과 관련된 부서 및 직원은 이를 상시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제 3 절 보험계약관리

제 48 조(일반원칙)
회사는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심사・보전・보험금지급 등 보험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 49 조(계약심사 및 보전)
①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범위(시스템)내에서 회사는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심사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계약정보 종합조회
2. 재정적 위험의 평가
3. 집중중복가입의 방지 등

②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회사의 계약인수나 심사규정, 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악성 및 불량계약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사업방법서, 약관상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관계 법규 및 협정에 의하여 인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계약심사를 함에 있어서 내・외부의 부당한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인수관련 규정에 따라 소신을 갖고 계약심사를 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경영진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⑤ 모든 영업관리자는 장기손해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계약보전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계약보전 과정에서 모집종사자들에 의한 임의약관대출이나 해지, 부활, 계약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처리시 자필서명, 위임장 등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 50 조(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방지)
① 모든 임직원은 금융사고예방대책규준 등을 준수하여 보험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위해 상품개발시 상품구조상의 보험사기 가능성과 법률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철저한 계약심사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상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법규 및 보험약관과 회사의 관련 지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보험사기 혐의를 인지한 때에는 보험사기조사 전담조직 등에 알리는 등 연계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보험금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지연 사유 및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보험금이 부지급 또는 감액지급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회사 고객센터,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를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보험금 지급 업무가 관련 법규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⑥ 보험사기 방지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경찰, 의료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경영진은 보험사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영정책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 경영진은 보험금지급업무가 내외부의 부당한 요청이 배제되고 법규 및 사규에 따라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보험사기조사 전담조직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범죄방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⑩ 회사는 보험금 지급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4 절 소비자보호업무

제 51 조(일반원칙)
① 모든 임직원은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잠재고객,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보험금수령권자 및 동 대리인 등" 이하 같음)가 전화, 방문 또는 문서(인터넷 포함)로 제기한 각종 불만사항, 민원 및 분쟁업무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나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② 경영진은 각종 민원이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및 유·무선 민원접수를 위한 시설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지원하여야 하고, 모든 이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소비자에게 이러한 제도를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제 52 조(업무처리)
① 민원 및 분쟁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소비자보호업무규정에 따른다.
② 모든 임직원은 분쟁처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제도적인 미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분쟁조정신청전에 소제기전 반드시 민원인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 절 퇴직연금업무

제 53 조(일반원칙)
회사는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3 조 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임직원 및 모집인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54 조(금지행위)

① 모든 임직원은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함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8 조 제 1 항, 제 29 조 제 1 항에 따른 운용·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7.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②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의 절차 및 방법은 『퇴직연금 금지행위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 6 장 의사결정구조의 효율적 구축

제 55 조(의사결정구조의 최적화)

①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효율적·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회사의 경영정보 및 관련자료를 적절히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허수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임직원은 이사회, 위원회의 결의·결정 등 정관 또는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소정의 절차를 거쳐 업무를 실행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그 판단근거를 문서 등으로 정확히 기록하여 회사 판단의 합리성 및 담당자의 책임범위를 정하기 위한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한다.

③ 경영진은 중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부서나 조직 상호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사태 발생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제 56 조(경영정보전달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영정보를 적시·적절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달·보관되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회사는 특별히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어 사규로 제한한 경영정보를 제외하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 열람, 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보가 관리소홀로 외부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7 조(개인[신용]정보 보호 등)

① 모든 임직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어 회사의 신용이 실추되거나,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나 신용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를 관계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기밀유지를 바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문서, 프로필 등을 외부에 가지고 가는 행위
2.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책상 위에 놓거나 컴퓨터 화면에 표시한 채로 두는 등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3.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전화, FAX, 이메일(e-mail)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송부하는 행위 등
4. 개인(신용)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5. 기타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③ 전사 정보관리 총괄은 법규상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정보관리보호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전사 정보관리 총괄의 책임과 의무는 『전사 정보관리 총괄규정』,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규정』 등 관련 사규에 따른다.

제 58 조(문서관리)

① 모든 임직원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문서(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의 문서 작성 및 작성된 문서의 위·변조 행위
2.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초래하기 쉬운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3. 회사가 기밀로 정하고 있는 문서에 필요한 기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4. 회사가 기밀로 정하고 있는 문서를 회사의 승낙없이 자택에 가져 가거나 분실하는 행위
5. 회사가 기밀로 정하고 있는 문서를 책상 위에 방치한 채 자리를 비우는 등

회사기준에 따른 엄격한 관리를 태만히 하는 행위
6. 존재하고 있던 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서 서둘러 폐기하는 행위
7. 문서의 보관기한을 정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기한내 무단으로 폐기하는 행위 등

제 59 조(인터넷 운영)
인터넷상에서 회사의 보험상품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자 및 회사의 상호·로고를 사용하여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본점 각 부서, 본부, 지점, 영업조직, 제휴업체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사이버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 보험가입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 60 조(보험계리 업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보험계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처리기준 및 세부 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상품개발 관련 업무
2. 최적기초율 산출 관련 업무
3. 계약자 배당 관련 업무
4. 실제사업비 배분 관련 업무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계리업무
② 보험계리업무처리기준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해당 업무부서에서 마련한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따른다.

제 60 조의 2(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
① 회사는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해당 업무부서에서 마련한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따른다.

제 7 장 내부통제관리 프로그램

제 61 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회사는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 62 조(윤리・준법서약서)

①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입사 시 및 입사 후 매년 1 회 윤리준법사이트의 윤리・준법서약서(별첨 1)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유가증권 매매 등 특정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유가증권 보유 및 매매내역 등에 대한 신고서를 내부통제관리부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63 조(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 임직원의 업무수행 절차 및 내부통제실태 등에 대한 점검
2. 부문별 내부통제
3. 준법감시인이 필요에 따라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보급 및 관리
4. 준법감시인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된 신고서나 보고서 및 각종 자료의 검토 확인

② 제 1 항 제 1 호에 의한 점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모니터링 시행
2. 준법감시담당자의 보고사항 확인 및 검토
3. 일상감시 및 특별감시 시행
4. 내부고발사항에 대한 조사 및 확인

③ 제 1 항 제 2 호에 의한 부문별 내부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법규준수

가. 사규의 제정・변경시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사전감시를 받는다.

나. 면부책과 관련한 업무처리는 부서별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대외기관 민원발생 건은 반기 1 회 준법감시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시 법규준수와 내부통제측면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감시를 받는다.

라. 법률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리스크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다.

2. 자산운용

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부문별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위험관리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준법감시인은 일상감시 및 특별감시를 통해 위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계약자보호

가. 경영공시내용은 준법감시인의 사전감시를 받는다.

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시 준법감시인의 사전감시를 받는다.

④ 준법감시인에게 제출된 자료는 별도로 관리되며 감사조직의 감사업무시 이를 활용토록 한다.

⑤ 자회사 및 기타 협력회사의 내부통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대표 또는 해당부서와 사전협의 한 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발송한다.

제 64 조(내부통제기준 위반자 처리 및 재발방지 조치)

① 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고, 보고시 감사위원회는 그 처리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기준 위반자
2. 지시・묵인・은폐 등 관여한 자
3. 다른 사람의 위반 사실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자
4. 기타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저해하는 자

③ 준법감시인은 감사위원회 보고시 제재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④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5 조(동기부여)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건의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내부고발자
2. 내부통제기준 준수 우수자
3. 기타 내부통제기준 운영 우수자

② 회사는 동기부여에 있어 그 대상자의 행위결과에 따른 사손발생의 예방정도와 그 효과 또는 회사가 그로 인해 얻게 된 이익 및 성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 66 조(내부통제기준 교육 및 자문)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 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통신교육 등으로 운영한다.

③ 교육은 내부통제기준의 중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기타 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와 계약자보호,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내용으로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연간 단위, 인별로 교육이력을 관리한다.

⑤ 교육을 총괄・주관하는 부서는 내부통제기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 67 조(내부고발제도)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동 제도를 고발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고발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는 동 제도에 따라 임직원 등의 법령 및 사규 등 위반행위를 고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로 하여야 하며, 비방이나 중상모략의 목적으로 동 제도를 악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내부고발 대상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례로 한다.

제 68 조(명령휴가제의 운영)

① 회사는 금융사고 등 각종사고와 위법.부당한 행위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명령휴가제도를 운영한다.
② 회사는 명령휴가의 적용대상, 기간, 실시주기,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69 조(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①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 2 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0 조(고위험사무 직무분리기준)

회사는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부족이나

사안의 시급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분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71 조(영업점 등 자체점검)
회사는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 년 10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준법서약서에 대한 경과조치)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는 입사할 때 회사에 제출한 서약서로 제 50 조제 1 항의 준법서약서를 대신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 년 5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9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9 조 제①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기의 기산일은 본 기준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1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2 년 7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2 년 11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3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3 년 12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4 년 5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 년 6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6 년 12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7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8 년 12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 년 3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 년 5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